일련번호	31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 (가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징 계 요 구

제 목 **관용차량 사적사용**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

조치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가과

징 계 대 상 자 경기도의료원 ♡♡병원 ◉◉◉

징 계 종 류 경징계

징 계 사 유

◉◉◉은 2008. 5. 1.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의료원 □□□□□으로서 경기도의료원 ♡♡병원 ▥▥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병원의 소속재산이며 관용차량인 ◈◈◈◈◈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 지침」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의료원 소유의 재산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관용 차량관리 지침」 제4조, 제15조, 제16조에 따르면 본부 및 산하병원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정된 차량을 제외하고는 출·퇴근용 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운전자는 운행 종료 시 산하병원 지정 주차장에 입고·주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병원의 소관업무 추진을 위해서만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출장이 종료된 후 관용차량은 ♡♡병원의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주차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붙임] '♡♡병원 관용차량(◈◈◈◈◈) 사적사용 내역' 과 같이 2018. 1. 4.부터 2019. 9. 30.까지 ♡♡병원의 관용차량인 ◈◈◈◈◈을 개인적 용무인 출・퇴근 용도로 총 ▩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그 결과 관용차량의 사적사용으로 관용차량 운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되었으며, [표] '관용차량 사적사용에 따른 예산 부당집행 총괄 내역' 과 같이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 등 총 ◆◆천원이 경기도의료원의 예산으로 부당하게 집행되었다.

[표] 관용차량 사적사용에 따른 예산 부당집행 총괄 내역 : 생략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은 2018. 1. 4.에 개정된 「경기도의료원 관용 차량관리 지침」에 대하여 ◐◐차량을 단순히 주말에만 차량입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관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관사를 임차하는 것보다 비용적으로 효율적이라 판단했으며, 본인의 보수가 적은 것에 대한 일종의 지원이나 혜택으로 판단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의료원 본부에서 2018. 1. 4.에 보낸 '경기도의료원 관용 차량관리 지침 일부개정 공포[1]' 의 주요내용에 '◐◐차량의 지정 주차장 입고・제외 차량 제외 규정 삭제' 와 '출・퇴근차량 지정 차량에서 ◐◐차량 삭제' 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으며, 해당 문서의 결재정보에서도 2018. 1. 5, 10:07:13에 본인이 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 같은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사람은 ♡♡병원 소속업무를 총괄하며 소관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1) 경기도의료원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을 통해서 접수된 민원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차량에 대한 지정 주차장 입고 제외 규정 삭제' 및 '출·퇴근차량으로 ◐◐차량 삭제' 지침 개정(시행일 : 2018.1.4.)

있는 ♡♡병원의 □□으로서, 소속 ♡♡병원 직원들의 경기도의료원 규정의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임에도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판단만으로 경기도의료원의 규정을 위반하여 ♡♡병원 소관 공용재산을 사용하여 본인 보수의 보상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경기도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 지침」제21조 및「경기도의료원 관용 차량관리 지침」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장은

○ 관용차량을 사적 사용·수익한 위 사람을 인사규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경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1-1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환수	재정상 조치금액	◆◆천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관용차량 관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 (가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병원에서는 「경기도의료원 관용 차량관리 지침」에 따라 ♡♡병원의 관용차량인 ◈◈◈◈◈의 차량관리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경기도의료원「경기도의료원 관용 차량관리 지침」 제4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에 따르면 본부 및 산하병원의 차량은 출·퇴근 차량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어 지정된 차량 외에는 출·퇴근 용도로 관용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운전자는 운행 종료 시 산하병원 지정 주차장에 입고·주차하여야 하며, 차량담당자는 관용차량의 사용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소속차량에 대하여 출·퇴근 차량으로 지정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출·퇴근 용도로 관용차량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배차된 차량의 운행종료

시에는 지정된 주차장에 입고여부를 확인하여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는 등 차량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병원 ◐◐차량이 개인적인 용도(출·퇴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비용이 [표] "♡♡병원 관용차량(◈◈◈◈◈) 사적사용에 다른 예산 부당집행 내역" 과 같이 경기도의료원 예산으로 부당하게 집행되었다. 또한 사적사용으로 인하여 차량의 운행 종료 후 지정 주차장에 입고되어야 할 관용차량이 총 ▥회에 걸쳐 지정 주차장에 입고되지 않았으며, 일부 차량운행 내역에 대하여 차량운행일지가 총 ◈회 작성되지 않았다.

[표] ♡♡병원 관용차량(◈◈◈◈◈) 사적사용에 따른 예산 부당집행 내역 : 생략

그 결과, 관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관용차량이 개인의 출·퇴근을 위한 사적용도로 사용되는 등 관용차량 운행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저하되었다.

4. 관계부서 의견

♡♡병원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2018.1.4.자로 「경기도의료원 관용 차량관리 지침」 개정된 ◐◐차량이 출·퇴근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으나, 개정이후 많은 업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관용차량을 병원 차고지에 입고하지 못하고 기존의 방식으로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 및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관사 또는 임대주택을 대여하거나 주택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 관련업무로 퇴근시간이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개정된 지침을 위반하여 기존의 방식대로 관용차량으로 출·퇴근하였다는 위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장은

○ 경기도의료원의 예산으로 부당하게 집행된 사적사용 금액 총 ◆◆천원을 환수하

시기 바라며, **(시정)**

○ 앞으로, 개정된 지침을 숙지하시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용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32	감사자	○○○급 ○○○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 가과 (나관) 경기도의료원 (다실)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훈계 요구

제 목 ○○병원 이전·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업무 처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 본청 (가과), 경기도의료원 △△(▽▽▽▽▽▽),
경기도의료원 ○○병원(라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 본청 (나), 경기도의료원 (다실)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 가과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과 「동법 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병원 이전·신축 임대형민간투자사업(이하 BTL) 실시협약서 등에 따라 ○○병원 이전·신축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 경기도의료원 ○○병원(BTL) 사업의 총괄 책임 권한을 갖고 업무를 수행 중이다.

경기도의료원 △△는 ○○병원 BTL 사업에 있어 경기도 가과로부터 2016년 3월 8일 부실시공 방지, 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업무담당관으로 지정받아 착공부터 준공까지 일련의 업무를 담당했다.

또 경기도의료원 ○○병원은 경기도 가과로부터 2018년 7월 17일 ○○병원 BTL 사업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한 업무담당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 중이다.

2. 준공일 소급에 따른 지연배상금 미부과 등 업무 소홀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간투자법」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제1항은 법 적용에 있어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거나 부대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준공확인)에 따라 주무관청이 정하는 공사준공보고서에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 포함), 지적측량성과도, 도면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민간투자법」제26조는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 주무관청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간투자법」제62조의 3(직무상의 의무)에 따르면 주무관청에서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낭비 및 손해를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를 진다.

한편「민간투자법」제2조(정의) 6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6은 '실시협약'은 동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민간투자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실시협약서 제28조(지체상금)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준공예정일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예정일 다음날로부터 사업시설의 준공일까지의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총사업비다.

실시협약서 제36조(예비준공검사 및 시설투자의 완료)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설 완공 전 30일까지 건설사업관리자가 작성한 예비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확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예비준공검사의 미비사항을 보완한 후 준공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또 같은 협약서 제37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제3항은 사업시행자의 준공검사보고서 접수 시 14일 이내에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실시협약상의 성과요구수준이 충족되고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사용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가과와 경기도의료원 △△는 성과요구수준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내용의 건설사업관리자의 준공조서를 첨부한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준공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등 민간투자법 등 관계법령, 실시협약서에 따라 준공 업무를 처리했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병원 BTL사업의 준공예정일(2018년 2월 28일)을 앞두고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와 체결한 실시협약서의 성과요구수준을 충족하지 못해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준공조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또 경기도의료원 △△는 2018년 2월 26일과 3월 10일, 3월 16일 3회에 걸쳐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 절차 이행을 촉구하며 성과요구수준 미충족에 따른 준공 지연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고 이같은 내용을 모두 경기도 가과에 보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가과와 경기도의료원 △△는 2018년 3월 19일 ○○병원에서 사업시행자, 건설사업관리자, ○○병원장 등 사업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 관련 회의를 갖고 ①사업시행자가 법적 소송을 중지하고 ②3월 말까지 공사 미비사항을 보완, 성과요구수준서를 충족하고 ③당초 병원 운영 시작일인 3월 1일부터 ○○병원 이전 전날인 3월 14일까지의 시설 운영비를 부담하겠다고 구두약속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추후 건설사업관리자의 준공검사 조서를 첨부한 준공확인절차 실제 이행 시점에서 준공확인필증의 준공일을 준공예정일이었던 2018년 2월 28일로 소급시켜주기로 약속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도 불구,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준공일 소급 약속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2018년 5월 31일에야 준공신청을 위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준공조서를 발급받아 경기도가과에 준공확인절차 이행을 신청했고 경기도 가과는 준공검사를 거쳐 6월 7일 준공확인필증을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했다.

경기도 가과는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면서 3월 19일 약속한대로 준공일을 2월 28일로 소급하고 3월 1일부터 관리운영권 개시일일 적용되는 관리운영권 등록원부를 교부했다.

그러나 경기도 가과와 경기도의료원 △△가 준공일 소급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준공일은 6월 7일이 되어야 하고 「민간투자법」, 실시협약서 제37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와 제53조(수익률의 산정)·54조(수익률의 조정)·55조(임대료의 산정), 실시협약서 별표08(시설임대료 산정방법)에 따라 이에 적용한 시설임대료는 반기당 1,991백만원으로 2월 28일을 준공일로 한 경우의 1,996백만원보다 반기당 5백만원씩 낮아질 수 있었다.[2)]

< 준공일 소급 적용 관련 산정 비교 >

(단위 : 백만원)

구분	준공일 적용 시점		준공시점에서의 시설임대료 산정식
	2월 28일	6월 7일	
국채수익률	2.53%	2.50%	시설임대료 = 총민간투자비 × $\frac{\text{수익률}}{1-(1+\text{수익률})^{-(\text{임대기간})}}$
가산금리	1.14%	1.14%	
수익률	3.67%	3.64%	
반기수익률	1.82%	1.80%	
총민간투자비	60,173		1. 임대기간은 40반기(20년×2반기/년)
시설임대료	1,996	1,991	2. 수익률은 반기수익율로 적용 [반기수익률 = $(1+\text{연간수익률})^{(1/2)}-1$]

이 결과, 경기도 가과와 경기도의료원 △△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준공이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병원이 신축건물로 이전해 사용을 시작한 3월 1일~14일까지의 지연배상금 8억4000만원[3]을 부과하지 못했고 50백만원[4]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3.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업무 소홀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실시협약서 제49조(성과의 평가)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50조(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구성된 성과평가위원로 하여금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 성과를 반기에 1회씩 평가해야 한다.

또 실시협약서 제50조(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사업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이 개시되기 이전에 실시협약서 부록02(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에 따라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실시협약서 부록02(성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은 개별위원의 구성방법 및 운영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병원 BTL사업에서의 성과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 1명(주무관청 소속 공무원)과 본 사업시설의 주무관청 소속 공무원 1명, 사업시행자측 2명, 이용자측(병원 관계자) 2명, 관련분야 전문가 2명(주무관청 1명, 사업시행자 1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다.

---

2)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등을 통해 조회한 결과, 관리운영권 개시일을 2018년 3월 1일로 할 경우, 5년 만기 국채수익율이 2.53%였지만 실제 관리운영권 설정이 이뤄진 6월 8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2.50%로 확인됐으며 이를 실시협약서 별표 8의 산정식으로 계산한 결과다.

3) 총민간투자비가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BTL사업의 특성상 지연배상금 추산금액은 변동 가능해 실시협약서상의 총민간투자비 60,173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4) 실시협약서 제53조(수익률의 산정)에서는 ○○병원 임대개시일의 최초 수익률은 지표금리를 적용해 임대개시 후 5년 동안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지표금리는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을 적용하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개시일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수익률 평균값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의 숫자는 반올림한다.

따라서 경기도 가과와 경기도의료원 ○○병원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실시협약서와 부록에 따라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나.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2019년 3월 8일 사업시행자 소속 평가위원 1명, 관련전문가 1명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자 경기도의료원 ○○병원에 관련 전문가로 ㈜▣▣▣▣ 소속 A 과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성과평가위원 변경을 통보했고 ○○병원은 3월 18일 이같은 내용을 경기도의료원 △△에 보고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 △△는 3월22일 경기도 가과에 변경 내용을 보고했다.

A 과장은 ○○병원 BTL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의 운영 출자사인 ㈜▣▣▣▣ 소속 직원으로 사업시행자측 추천 전문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였다.

경기도 가과는 성과위원회 참석 자격이 없는 A 과장이 참석했음에도 불구,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2019년 9월 28일 '2019년 상반기 성과평가위원회'를 ○○병원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더욱이 2019년 2월 21일 ○○병원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성과평가위원회'에도 ㈜▣▣▣▣ 소속 A 과장이 사업시행자 추천 전문가몫의 성과평가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사실이 금번 감사에서 확인되었다.

이 결과, 경기도 가과와 경기도의료원 ○○병원은 자격이 없는 자가 성과평가위원회에 참석, 시설이용가능성 평가 및 유지관리성 평가 결과를 의결했음에도 불구,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업무를 소홀히 했다.

4. 관계부서 의견

경기도 가과와 경기도의료원 △△, 경기도의료원 ○○병원에서는 준공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가. 준공일 소급으로 지연배상금 미부과 및 재정상 손실 초래

○○병원 BTL사업 준공 소급 결정과 관련, 경기도 가과와 경기도립의료원 △△는 사업시행자가 2018년 2월 28일 안성시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였지만 잔여 공사 미실시를 사유로 준공확인필증 교부가 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지연배상금 부과 시 사업시행자의 법적 소송이 확실시됐고 이에 따른 소송 진행 시 마무리공사 등에 차질을 빚어 사용 중인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불가피했을 수 있다고 밝히며 BTL사업의 특성상 마무리 공사를 건설하자로 처리할 경우, 보수공사가 제대로 진행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면도 고려했다고 주장한다. ◈◈◈◈◈가 ◉◉◉◉◉◉ BTL사업에서 2017년 7월 27일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면서 준공일을 2017년 5월 17일로 소급하여 적용한 사례를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또 준공일 소급을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 ○○병원은 이전하였지만 환자 진료와 마무리공사 미비로 혼잡하였고 하도급업체들은 임금체불을 사유로 공사 중지를 하겠다며 사업시행자를 압박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였음에도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준공조서를 발급받지 못해 준공이 지연, 경영난이 심화된다며 소송 의사를 밝히고 있었으며 안성시 교통영향평가 결과, 조건부 사항인 부지 외 추가 공사비 증액 건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밖에 사업시행자, 건설사업관리자, ○○병원 간 공사 미비사항을 놓고 심각한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어 사전 방침을 받지 못한 채 2018년 3월 19일 ◍◍◍◍◍◍이 단독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준공일을 소급결정했다고 했다.

참고로 경기도 가과와 경기도의료원 △△는 2018년 3월 19일 회의에서 준공일 소급을 결정하지 못한 채 법적 다툼이 발생했다면 현재까지 병원 운영이 어려웠을 수도 있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준공일 소급 적용 결정에 따라 50백만원의 재정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결과론적인 상황으로 변동성을 예측하지 못한 금리하락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기도 가과와 경기도의료원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시행자가 주고받은 각종 공문에 따르면 ○○병원 BTL사업의 준공 지연의 원인은 사업시행자의 성과요구수준 미충족으로 주무관청이나 건설사업관리자의 귀책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경영난이나 법적 소송 준비, 하도급 체불에 따른 공사 등도 주무관청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주무관청인 경기도 가과, 업무담당관이었던 경기도의료원 △△는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서 등에서 정한 내용대로 준공 업무를 처리했어야 한다.

나.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소홀

경기도 가과, 경기도의료원 ○○병원은 감사 지적사항을 수용하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 가과장은

○ 앞으로 ○○병원 BTL사업과 관련해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실시협약서를 준수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또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합니다.

경기도의료원장은

○ 앞으로 ○○병원 BTL사업과 관련해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실시협약서를 준수하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립니다. **(주의)**

○ 또 관련자에게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일련번호	33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환수	재정상 조치금액	5,701,80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의료원 가병원 등 4개 병원 나과 (경기도의료원 다실)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 요구

제 목 **의사직 진료실적수당 지급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가병원 등 4개 병원 (나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본부 (다실)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가병원 등 6개 병원에서는 「진료실적수당 및 성과급지급 시행내규」 및 「의사 개인별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소속 의사직에 대한 진료실적수당 지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진료실적수당 및 성과급지급 시행내규」 제5조(지급대상) 및 제6조(지급방법)에 따르면 진료 실적수당은 의료원 인사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사 중 의료원장으로부터 월간 진료목표액을 부여받은 직접진료 의사와 마취과장, 임상병리과장, 방사선과장, 기타 개인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의사 등 간접진료 의사에게 지급하고, 간접진료 의사에게는 직접진료 의사의 1인당 년평균 지급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의사 개인별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진료 실적수당 중 고정 성과급의 경우 계약보수표의 금액으로 매월 지급하되, 휴직, 정직, 병가, 출산휴가 등 실제 근무

하지 않은 기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들에서는 의사직 진료 실적수당 지급 업무 처리 시 위 규정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보수표의 금액에서 병가, 출산휴가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후 진료실적 수당 중 고정성과급이 지급되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경기도의료원 가병원 등 4개 병원 행정과에서는 [표 1] "실제근무하지 않은 기간 중 고정 성과급 지급 현황 (의사직)" 과 같이 가병원 라과 A가 발가락 골절 사유로 2016년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병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고정 성과급 974,190원, 마병원 바과 B가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기타 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의 사유로 2018년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병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고정 성과급 578,220원, 사병원 아과 C가 건강상의 문제로 2019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병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고정 성과급 1,623,870원, 자병원 차과 D가 심신상의사유로 2018년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3.5일간 병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고정 성과급 799,700원, 카병원 타과 E가 심신상의사유로 2016년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병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고정 성과급 1,290,330원, 카병원 파과 F가 배우자출산사유로 2016년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고정 성과급 435,490원 등 총 6명(병가 5, 출산휴가 1)에게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진료실적수당 5,701,8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표 1] : 실제근무하지 않은 기간 중 고정 성과급 지급 현황 (의사직) "생략"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 가병원 등 4개 병원장은

○ 잘 못 지급된 의사직 진료실적 수당 5,701,800원을 환수조치 하시고,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사직 진료실적수당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34	감사자	○○○급 ○○○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의료원 가병원 나과 (경기도의료원 다실)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훈계 요구

제 목 **근속승진 임용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가병원 (나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본부 (다실)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가병원에서는 「경기도의료원 정관」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근속승진 임용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경기도의료원 정관」제31조의2(근속승진 임용)에 따르면 직원의 근속승진 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 근속승진 임용에 의하고, 근속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제2항에 따르면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7급은 11년 이상, 8급은 7년 이상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제6항에 따르면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근속승진 후보자(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을 말한다)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할 수 없으며,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는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근속승진 임용 업무 처리 시 위 규정들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수 범위내에서 근속승진을 임용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경기도의료원 가병원 나과에서는 [표 1] “2018. 7. 1. 기준 근속승진 임용 전 기술기능○급(◇사) 현황”과 같이 총 기술기능○급(◇사) 10명 중 2018년 7월 1일 기준 근속승진이 가능한 7급 재직경력 11년 이상은 A, B 2명으로 위 규정에 따른 근속승진 가능 인원 수는 근속승진 후보자 2명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1명만 근속승진이 가능함에도

[표 2] “2018년, 2019년 기술기능○급(◇사) 근속승진 임용 현황”과 같이 근속승진 후보자 A, B 2명 모두 근속승진 임용되어 이중 1명은 이후 2019년 7월 1일 근속승진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보다 1년 가량 일찍 승진하게 되었으므로, 경기도의료원 소속 타 병원과 비교하여 형평성 없이 근속승진 임용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 되었다.

[표 1] : 2018. 7. 1. 기준 근속승진 임용 전 기술기능○급(◇사) 현황 “생략”

[표 2] : 2018년, 2019년 기술기능○급(◇사) 근속승진 임용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 가병원장은

○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 업무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근속승진 임용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에게는「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일련번호	35	감사자	○○○급 ○○○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의료원 가병원 나과 (경기도의료원 다실)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훈계 요구

제 목 **가산점 미적용 등 채용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가병원 (나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본부 (다실)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가병원에서는 경기도의료원 「정관」, 「인사규정」 및 「인사운영지침」 등에 따라 직원 인력관리 및 채용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경기도의료원「정관」제31조(정원)에 따르면 의료원의 직원은 일반직, 기술기능직, 일반기능직 등으로 구분하고, 일반직 중에서 의료기술직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가 포함되며, 세부 직종별, 직급별 정원표를 별표로 규정하면서 정원의 범위 내에서 또는 별도의 재원이 있는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계약직 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인사규정」제18조(신규채용방법) 및 제23조(직원의 계약직 운영)에 따르면 직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고, 의료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 직종에 대하여 인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정기간

계약기간을 정해 계약직으로 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인사운영지침」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6개병원 포함) 근무기간에 따라 1~3개월은 2%부터 24개월 이상은 10%까의 경력 가산점을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각각 적용하며,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면접시험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직원 채용 시 위 규정 등에 따라 정원의 범위 인력 운영 및 신규채용 시 가산점 적용 등 적정한 인력운영과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채용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정원 외 채용으로 인한 합격자 장기 대기

그런데도, 경기도의료원 가병원 나과에서는 [표 1] “2017. 12. 14. 정관 변경에 따른 가병원 ◇사 정원 변동 및 채용계획(안) 수립 현황”과 같이 2017년 12월 14일 경기도의료원「정관」일부개정에 따라 ◇사 정원이 당초 5명에서 8명으로 증원이 됨에 따라 2018년 4월 9일 기존 정규직 5명 외 계약직 1명(계약기간 : 2017. 4. 3. ~ 2018. 12. 31.) 총 6명의 현원이 있어 신규 채용이 가능한 인원이 2명임에도 2018년 4월 9일 채용시기를 5월 중 예정으로 하여 3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사(정규직) 채용계획(안) <경의수 행정-6124(2018. 4. 9.)호>을 수립, 2018년 4월 27일 공고하였다.

그에 따라 2018년 5월 16일 면접을 거쳐 2018년 5월 18일 3명(면접결과 1순위 A, 2순위 B, 3순위 C)이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어 정원 내 채용 가능한 2명(A, B)은 2018년 5월 21일 임용되었음에도, 나머지 1명(C)은 기존 계약직 ◇사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정원 초과로 공고문 상 채용시기인 5월에서 약 7개월 지연된 2019년 1월 1일에서야 임용되었다.

[표 1] : 정관 변경에 따른 가병원 ◇사 정원 변동 및 채용계획(안) 수립 현황 “생략”

나. 경기도의료원 근무경력 가산점 미적용

경기도의료원 가병원 나과에서는 [표 2] “2018. 4월 ◇사 채용 응시자 현황 및 가산점 적용 현황”과 같이 2018년 4월 위 가항의 ◇사 신규채용 계획 수립 시부터 경기도의료원 근무경력 가산점 항목을 생략하여 기존 경기도의료원 근무경력이 있던 D 외 5명에게 주어져야 했던 경기도의료원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아, 가산점을 받았을 경우 병원장에게 추천되는 6명(채용예정인원 3명의 2배수)에 들어가야 했던 E와 F가 제외되었다.

그 결과, 채용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 되었다.

[표 2] : 2018. 4월 ◇사 채용 응시자 현황 및 가산점 적용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 가병원장은

○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채용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에게는「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일련번호	36	감사자	○○○급 ○○○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의료원 가팀 (경기도의료원 나실)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 요구

제 목 **인사규정 개정 소홀 (면접시험 외부위원 참여 기준 미준수)**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본부 (가팀)

조치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본부 (나실)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은「인사규정」 및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 지침」 등에 따라 직원 채용 시 면접시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부규정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2014. 9. 25 제정, 2019. 7. 9. 개정)」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 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위원을 2분의 1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12조(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제18조의1(시험방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의료원은 운영본부장, 병원은 진료부장), 부위원장(의료원은 행정지원팀장, 병원은 행정과장)과 의료원장 또는 병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등 총 9인 이내로 구성하고,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직원 채용 시 면접시험에 외부 전문위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위촉하거나, 인사위원회가 아닌 별도 외부위원 위촉을 통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위 경기도의료원「인사규정」을 개정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경기도의료원에서는 2012년 11월 13일 “경기도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방안 통보”(경기도 평가담당관-12572호)에서 승진 등 내부 인사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승진심사위원회 등 내부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1/2 이상 위촉하는 것으로 인사규정 지침(별첨 참고)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통보받고도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에 대한 인사규정 마련 등을 미이행하여 2016년 6월 21일 2016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8년 9월 6일에는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규정 개정 알림”(경기도 평가담당관-11796호)에서 서류전형 단계부터 외부전문가 참여 의무화 및 참여비율 1/2 이상으로 통일하도록 하는 시험외부위원 위촉기준을 통보받았다.

또한 2019년 6월 26일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규정 개정 알림”(경기도 평가담당관-8902호)에서 시험 외부위원 선정기준 불충분으로 ‘비상임이사, 퇴직자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시험과정에 외부위원으로 참여 금지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왔으며, 감사일 현재(2019. 10. 29.)까지도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하여

[표] “면접 시험위원 내·외부 면접위원 참여 현황” 과 같이 결과적으로 면접시험 외부위원 참여 기준을 미준수하여 총 639건의 면접시험 검정을 인사위원회 내부위원만으로 실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장은

○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하고, 직원 채용 시 외부 전문위원을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인사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표] : 면접 시험위원 내·외부 면접위원 참여 현황 “생략”

일련번호	37	감사자	○○○급 ○○○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의료원 가팀 (경기도의료원 나실)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 요구

제 목 **불합리한 단체협약 체결**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본부 (가팀)

조치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본부 (나실)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은「인사규정」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인사규정」 제12조(인사위원회의 구성), 제1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및 제14조(인사위원회의 회의) 규정에 따르면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 규정에 규정된 인사에 관한 운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의 경우 의료원은 운영본부장, 병원은 진료부장이, 부위원장의 경우 의료원은 행정지원팀장, 병원은 행정과장이, 위원의 경우는 의료원장 또는 병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로 구성 하며, 위원회는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2016년 10월 5일 “「지방의료원 단체협약 체결기준 지침」 마련 통보”(경기도 건강증진과-19497호)에서 인사 · 경영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체협약에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조항을 개선하여야 하고, 인사권 관련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사례 등과 같이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개선하고 2016년 12월까지 개선하고 단체협약 내용을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http://rhs.mohw.go.kr에 공개하도록 통보 받은 바 있다.

경기도의료원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35조와 제36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구성 시 조합에서 추천하는 노동조합 대표 2인을 당연직 인사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징계위원회는 사용자(인사위원장 겸임) 1명, 노측 1명, 외부위원 6명(사용자 3명, 노조 3명 위원 추천)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 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되 다만, 해임·파면·면직·강등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인사규정」과 달리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인사권(징계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방의료원 단체협약 체결기준 지침(2016. 10.」에 따라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을 통해 개선하는 등 단체협약 체결 시 위 규정들에 따라 내부규정과 상충되거나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단체협약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경기도의료원에서는 「단체협약」 에 따라 징계위원회 구성 운영이 「인사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됨에 따라 인사위원회 고유 권한인 인사권(징계권)을 「단체협약」에 따라 별도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대신하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단체협약」 에 징계의결은 「인사규정」과 달리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위원장이 중복하여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이 상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징계위원은 노사 각각 4인으로 노사동수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파면·해임·강등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 징계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직원의 중대한 잘못으로 중징계 의결을 하고자 해도 노조측에서 반대하는 경우 징계권 행사가 어렵게 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징계권)이 침해되도록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온 사실이 있다.

[표] :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장은

○ 사용자의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인사권(징계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하여는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38	감사자	○○○급 ○○○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의료원 가병원 등 6개 병원 나과 (경기도의료원 다실)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개선 요구

제 목 **의사직 진료실적수당 지급기준 개선**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가병원 등 6개 병원 (나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본부 (다실)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가병원에서는 「진료실적수당 및 성과급지급 시행내규」 등에 따라 소속 의사직 진료실적 수당 지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진료실적수당 및 성과급지급 시행내규」제5조(지급대상) 및 제6조(지급방법)에 따르면 진료실적수당은 의료원 인사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사 중 의료원장으로부터 월간 진료목표액을 부여받은 직접진료의사와 마취과장, 임상병리과장, 방사선과장, 기타 개인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의사 등 간접진료 의사에게 지급하고, 진료실적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직접진료의사는 진료과별로 연간 진료수입목표액을 설정하여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며, 간접진료 의사에게는 직접진료 의사의 1인당 년평균 지급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진료실적수당 및 성과급지급 시행내규」 < 별표 1 >

의사진료실적수당 지급기준

○ 진료실적수당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전년도 월평균 진료실적에 따라 산정하되, 진료실적 목표달성의 가능성이 있는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달성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기준을 설정한다.

구 분	비 율	월 지 급 금 액		비 고
		증 가 액	감 소 액	
전년도 연평균 대비 당년도 진료실적	5퍼센트	50만원	50만원	
	10퍼센트	100만원	100만원	
	15퍼센트	150만원	150만원	
	20퍼센트	200만원	200만원	
	25퍼센트	250만원	250만원	
	30퍼센트	300만원	300만원	

[비고] 1999년에는 1998년의 지급금액을 연계하여 책정한다.

그리고, 같은 내규 제7조(목표액의 설정) 의료원장은 당해 의사의 월평균보수액, 최근 3년간 각 진료과별 총의업수입 및 순이익(인건비 · 재료비는 제외한다)의 분석자료, 전국의료원의 전전년도 진료과별 평균의업수입, 기타 목표설정에 따른 참고 부속자료(응급진료, 순회진료, 재해진료, 참여실적 등), 의료원의 경영에 대한 기여도(의업순수익증대기여, 의료사고대책 등) 등 기준을 감안하여 진료과별 월별실적을 기초로 연간 목표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의사채용 및 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행위료 실적 성과급은 진료수입 중 행위료 수입에서 기본급여의 150%를 공제한 차액을 성과기준금액으로 하여 성과급 지급비율 5 ~ 30%에 따라 지급되도록 되어 있고, 행위료 실적 성과급을 적용하는 진료과목은 "별표 1"과 같다고 되어 있다.

【행위료 실적 성과급 지급 산식 (단위 : 천원)】

기본급 : 6,000 행위료 : 30,000 공제비율 150% **성과급지급비율 : 20%**

{30,000 - (6,000×150%)} × 20% = 4,200

※ 총보수/월 = 기본급 +제수당 +성과급 +부가급여
(6,000 + 1,956 + 4,200 + 부가급여 = 12,156 + 부가급여)

「경기도의료원 의사채용 및 계약에 관한 지침」< 별표 1 >

진료과목별 성과급 적용방법

성과급 분류	적 용 진 료 과 목
행위료 실적 성과급	내과,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정신과, 치과, 안과, 재활의학과, 한방과
특정실적 성과급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실, 치과, 건강관리과
고정 성과급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실, 진단검사의학과,
정책기여 성과급	진료과장

▷ 중복된 진료과의 경우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거나 혼합하여 적용할 수 있음

▷ 특정한 진료실적과 연계하는 특정실적 성과급, 정책기여 성과급운영은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여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개발 운영함

- 사 례 -	
특정실적 성과급	◆ 방사선과 - 흉부직촬판독 000원, 흉부간촬판독 000원, 위장조영 0만원, 초음파검사 0만원, 유방암검사 0천원 ◆ 마 취 과 - 통증치료 0천원, 전신마취 00천원, 부분마취 00천원 ◆ 응 급 실 - 야간진료인원 00천원, 입원처리인원 00천원 ◆ 치 과 - 이동건강검진인원 0천원 ◆ 공 통 - 야간콜 진료 00천원, 야간콜 수술 00천원
정책기여 성과급	◆ 진료과별 CP 개발 및 적용(달성)률 ◆ 의료적정성 평가 대비 적용(달성)률 ◆ 각 소관 위원회 참여도 및 참석률 ◆ 기타 각종 병원 회의 및 교육 참석률

따라서 위 기관들에서는 의사직 진료실적 수당 지급 업무 처리 시 위 규정들에 따라 연간 진료수입 목표액을 설정하고, 진료과목별 성과급 분류 기준 맞도록 성과급을 적용하며, 의사 개인별 성과급 지급비율 선정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에 맞도록 진료실적수당이 지급되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연간 진료수입목표액 미수립

[표 1] “연간 진료수입 목표액 미수립 현황”과 같이 과 같이 감사일 기준(2019. 10. 28.) 2017년 32명(미수립 비율 35.1%), 2018년 29명(미수립 비율 29.8%), 2019년 22명(미수립 비율 23.6%) 등 3년간 총 83명(3년 평균 미수립 비율 29.5%)이 연간 진료수입 목표액을 미수립한 사실이 있다.

[표 1] : 연간 진료수입 목표액 미수립 현황 “생략”

나. 진료과목별 성과급 적용방법 부적정

[표 2] “진료과목별 성과급 적용방법 부적정 현황”과 같이 감사일 기준(2019. 10. 28.) 2017년 가병원 □과5 A 등 26명, 2018년 라병원 □과1 B 등 28명, 마병원 2019년 □과 C 등 41명, 3년간 총 95명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단방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실, 진단검사의학과 4개 진료과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고정 성과급을 내과 등 타 진료과목에도 적용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 진료과목별 성과급 적용방법 부적정 현황 (고정 성과급 지급) “생략”

다. 중복진료 과목이 아님에도 행위료 실적 및 고정 성과급 혼합적용

[표 3] “고정 성과급 외 행위료 실적 추가 지급 현황(성과급 혼합적용 현황)”과 같이 감사일 기준(2019. 10. 28.) 매월 지급할 진료실적 수당의 기준을 “전월 진료수입액 초과 시 초과 진료실적 수입액에 한하여 10%의 성과급을 적용하며 추가로 당월에 지급한다.”라는 기준을 임의로 적용함으로써 2017년 가병원 □과 D 등 총 40명, 2018년 라병원 □과 E 등 38명, 2019년 마병원 □과 F 등 20명, 3년간 총 98명에게 중복 진료과가 아님에도 행위료 실적 성과급과 고정 성과급 지급방법을 혼합 적용한 사실이 있다.

[표 3] : 고정 성과급 외 행위료 실적 추가 지급 현황 (성과급 혼합적용 현황) “생략”

라. 성과급 지급 적용 기준 미비

[표 4] “성과급 지급 적용 기준 현황” 과 같이 고정 성과급 지급의 경우 의사직 개인별로 적게는 4,000천 원부터 많게는 22,270천 원까지로 월별 지급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실적 성과급 지급의 경우도 성과급 지급비율이 의사직 개인별로 13%부터 30%까지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객관적인 기준 없이 각 병원장의 단독 결정에 의하여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다.

[표 4] : 성과급 지급 적용 기준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 및 가병원장 등 6개 병원장은

○ 각 병원의 형평에 맞는 객관적인 진료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일련번호	39	감사자	○○○급 ○○○		공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의료원 본부, 가병원 (본부 감사실)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 의 · 훈 계 요 구

제 목 **의료기기 납품 지연 등 계약업무 소홀**

소 관 기 관 경기도의료원(□팀), 가병원

조 치 기 관 경기도의료원 본부 감사실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산하병원에서 道의료원(본부)으로 구매신청을 하고 道의료원◎에서 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업체에서는 장비를 납품·설치하고 이 후 해당 장비를 검수하는 과정을 거쳐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의료원에서는 ▧▧▧▧. ▧. ▧▧. 조달청 나라장터에 「경기도의료원 가병원 ☆ ☆☆☆(★, ★) 구매」를 공고하였으며[경도의 공고 제 ▧▧▧▧- ▧▧호], ▧▧▧▧. ▧. ▧▧. □□□□와 ☆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5)]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운용되고 있으며, 이 법에는 입찰의 공고, 입찰보증금,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

5) 계약금액 : 456,500,000원 / 납품기한 : 2018. 3. 9. / 납품장소 : 경기도의료원 가병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7절2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①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②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 등) ④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의료원「회계규정」 제184조에 따르면, 계약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의료기기 구매 등 계약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고, 계약업체에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배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 · 검토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의료원 가병원에서는 계약업체인 □□□□에서 해당 의료기기를 당초 계약기간 종료일인 ▧▧▧▧. ▧. ▧.까지 가병원에 납품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기간보다 ○일이 경과된 ▧▧▧▧. ▧. ▧▧.에야 계약기간을 ▧▧▧▧. ▧. ▧▧.까지 변경해 줄 것을 의료원 ◎로 요청하였다. 그리고 의료원◎에서는 ▧▧▧▧. ▧. ▧▧. 가병원으로 계약기간을 ▧▧▧▧. ▧. ▧▧.까지로 변경통보 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의료원과 가병원에서는 계약업체에서 ▧▧▧▧. ▧. ▧▧. 의료기기를 납품할 때까지 납품의 독려 등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의료기기의 구매절차가 당초 계약기간인 ▧▧▧▧. ▧. ▧▧. 보다 ○일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가병원 담당자 ○○○은 ▧▧▧▧. ▧월 가병원 신축 · 이전과 관련하여 업무량이 과다하여 의료기기가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미처 챙기지 못하였으며, 의료원(◎) 담당자 □□□은 가병원의 공문에 따라 변경(연장) 처리한 것이라고 각각 주장한다. 그러나, ▧▧▧▧. ▧. ▧▧. 위 사람들이 직접 검수조서에 날인하였고, 계약기간의 연장은 검수조서 작성 이후인 ▧▧▧▧. ▧. ▧▧.에야 통보되는 등 이 사안은 계약업무 담당자인 위 사람들이 계약업체에서 기한내에 해당 의료기기를 납품하였는지 여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아도 쉽사리 알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 주장은 이유가 없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장은

○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앞으로 납품의 지연 등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면밀한 조사 · 확인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 ☆☆☆의 납품 지연과정에서 계약업체에 납품의 독려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들을 「인사규정」에 따라「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일련번호	40	감사자	○○○급 ○○○		공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의료원 본부 (본부 감사실)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일련번호	41	감사자	○○○급 ○○○		공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의료원 본부 (가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통 보

제 목 **경기도의료원 「의료 수가 관리 규정」에 관련규정 반영 불철저**

소 관 기 관 경기도의료원 본부(가팀)

조 치 기 관 경기도의료원 본부(나실)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정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내규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의료수가 및 제사용 요금을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징수하기 위하여 「의료 수가관리 규정」을 제정 · 시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운영지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이 조에서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후, 2016.10.5. 경기도(가과)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을 경기도의료원에 송부하였으며, 동 지침에 따르면 청탁유발 소지가 있는 병원장의 자의적인 특별감면제도는 감면해 주면 안 되는 내용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위와는 별도로 국공립병원에서 운영하는 진료비 감면의 대상과 폭이 과다하여 병원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운영과정의 공정

성과 투명성이 미흡한 바, 2012.12.5. 병원장의 자의적인 특별 감면제도 폐지, 직원, 배우자 · 직계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율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 · 공립병원 진료비 감면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의안번호 제2012-185호)」을 경기도의료원 등 각 지방의료원에 권고하였다.

따라서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보건복지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료 수가관리 규정」에 규정된 병원장의 자의적인 특별감면제도를 개정(폐지)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감사일 현재, 경기도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 수가관리 규정」 제7조(제요금의 감면)에 따르면, 병원장이 제요금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할 수 있는 자로 아래와 같이 '1. □□□□□□□□ 자' 외에 '3. 기타 병원장이 합당한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가 여전히 규정되어 있다.

그 결과 「의료 수가관리 규정」 이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보건복지부)」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저촉되고, 산하병원장의 자의적인 진료비 감면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장**은 현재 운용중인 「의료 수가관리 규정」 제7조(제요금의 감면)의 내용을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보건복지부)」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의안번호 제2012-185호)를 반영,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42	감사자	○○○급 ○○○		공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수원병원 등 산하병원 (6개 산하병원)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통 보

제 목 **□□□□ 구매입찰 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조 치 기 관 경기도의료원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정관에 따르면 의료원 산하에 6개 병원을 두고 있으며, 각 병원에는 행정과, 원무과, 공공사업과, 적정진료실, 진료각 과, 간호과, 약제과 등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경기도의료원에서 의료원의 조직과 기준 및 업무분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 운영 중인「직제규정」에 따르면 예산, 결산, 계약 등은 각 산하병원 행정과(장)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하병원에서 소요되는 □□□□에 대한 입찰 및 계약은 각 산하병원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경기도의료원「회계규정」제18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 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9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입찰참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등 11가지의 경우가,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단서)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로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 기술 · 자재 ·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등 12가지의 경우가 각각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따르면,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투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사례 등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사항들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료원 및 각 산하병원에서는 “급식재료 구매입찰”을 진행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히 입찰참자자격을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투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지 않아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경기도의료원의 각 산하병원에서는 조달청(나라장터)를 통하여 “□□□□ 구매 입찰”을 진행하면서, “「표」 경기도의료원 □□□□(○○) 입찰 및 계약 현황”과 같이 사전에 □□□□ 시장조사에 참여한 업체들만을 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방법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였다.

그 결과 □□□□ 시장조사에 참여한 특정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다른 업체들의 입찰참여기회를 박탈하였고, 특히 가병원과 나병원의 경우에는 최근 ▧년간 특정업체(가병원 : ◎◎◎◎ / 나병원 : ㈜◇◇◇◇)와만 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이에 대하여 경기도의료원과 각 산하병원에서는 ①□□□□ 시장조사에 참가한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것과 같은 의미로 파악하고 있으며, ②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시장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입찰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등 원활하고 안정적인 □□□□의 수급을 위한 최선의 계약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투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사례가 규정되어 있으며, ② "원활하고 안정적인 □□□□ 수급" 은 「지방계약법」 제20조와 제22조에 규정된 제한입찰 혹은 지명입찰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주장은 이유가 없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장은

앞으로 □□□□ 구매입찰을 진행할 때에는 입찰 참여자격을 부적정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표]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 □□□□(○○) 입찰 및 계약 현황 : 생략

일련번호	43	감사자	○○○급 ○○○		공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가병원 나과 (본부 감사실)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 요구

제 목 **소속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기도의료원 가병원

조 치 기 관 경기도의료원 본부 감사실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직원의 근로조건 및 취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복무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의 근무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사규에서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道의료원「복무규정」 제6조에 따르면, 직원은 관계법령과 의료원의 사규를 준수하고 맡은바 직무를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13조와 제17조에 따르면, 직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직원은 시업시간(8시 30분) 전에 근무처에 도착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하되, 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당일 오전 중으로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3조에 따르면 직원의 휴가는 법정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되어 있으며, 휴가를 받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 휴가원을 나팀과 나과로 제출하

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道의료원 및 산하병원 직원들은 의료원의 사규를 준수하고 맡은바 직무를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결근 및 휴가 등은 의료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용하는 등 복무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가병원 나과 ○○○은 사전에 소속장인 나과장(▽▽▽)의 승인없이 ▧▧▧▧. ▧. ▧▧.부터 ▧. ▧▧.까지 휴가(◎◎)를 사용하였으며, 이후 ▧▧▧▧. ▧. ▧. 나과 ◇◇◇가 휴가(◎◎)를 상신하여 ▧. ▧▧. 대리 ◆◆◆이 검토, 나과장 ▽▽▽이 결재를 완료하였다.

그 결과 나과 ○○○의 휴가(◎◎)신청은 이미 휴가를 사용한 지 ▧일이 경과한 ▧▧▧▧. ▧. ▧.에 완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이에 대하여 ○○○은 ▧▧▧▧. ▧월에 실제로 경기도의료원 가병원에 입원하여 병가를 사용한 바, ①병가사용에 대하여 당시 나과장 ▽▽▽에게 구두로 승인을 받았으며, ②의료원 복무규정 제23조(휴가)에 따르면,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휴가(◎◎) 사용이 부적정하지 않으며, ▽▽▽은 ▧▧▧▧. ▧월경 가병원에 입원한 ○○○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의 병가 사용 요청에 대하여 구두 승낙하였다고 각각 주장한다.

그러나, ①○○○이 입원한 병원은 바로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의료원 가병원이었으며, ②휴가(◎◎) 결재도 병가 종료직후가 아닌, ▧이 경과된 ▧▧▧▧. ▧. ▧에야 상신된 바, ○○○ 자신이 미리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결과는 초래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③당시, ▽▽▽은 병원 직원들의 복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나과장에 재직중 이었던 사실을 감안할 때 이 주장들은 이유가 없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장은

○ 앞으로는 이와 같이 사전에 휴가를 사용하고, ▧일이 경과된 후에 승인을 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44	감사자	○급 A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의료원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 의 · 훈 계 요 구

제 목 **하자보수보증금 징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조치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병원(이하 “▦▦병원”)의 이전신축 사업은 민간투자사업(BTL)으로 2015 6.30. 경기도(▣▣▣▣과)에서 ◍◍◍◍의료원(주)을 사업시행자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의료원(주)에서는 2018. 2. 28. 사용승인을 □시로부터 득하였으며,

경기도는 2018. 6. 7. ◍◍◍◍의료원(주)에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였고 그 내용으로 준공일을 2018. 2. 28.로 하고, 관리운영[6]기간을 2018 3. 1. ~ 2038. 2. 28.(20년) 기간으로 정 하였다.

한편 경기도의료원은 경기도로부터 업무담당관으로 위임받아 ▦▦병원 사업시설의 준공확인과 준공 후 하자보수를 포함한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6) 실시협약서 제1장(총칙) 제3조(용어의 정의) 10. **“관리운영권”**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고 **유지, 관리**하며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권리를 말한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계약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그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을 검사가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내게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 미 이행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병원 이전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실시협약서」 제30조 및 제45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경기도의료원)는 민간투자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공사감독과 준공 후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업무담당관으로 지정된 경기도의료원은 ▦▦병원의 준공검사 시 사업시행자인 ◍◍◍◍의료원(주)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준공완료 후 ▦▦병원의 보수가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하자보수의무 이행기관으로 하여금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경기도의료원에서는 ▦▦병원의 준공일이 2018. 2. 28. 임에도 93일을 경과한 2018. 6. 1. 준공확인을 경기도에 보고하여 공사비 47,039백만 원이 정산되도록 하였으며

하자보수 보증서에 대하여는 준공확인 이후 하자보수보증금을 징구하지 않고 있다가 ▦▦병원의 준공이후 2019. 1. 14. ◍◍◍◍의료원(주)에 하자보수 보증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였고 ◍◍◍◍의료원(주)이 제출한 하자보수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준공일인 2018. 2.28.을 경과하여《표》와 같이 각각 △△산업(주) 185일 경과(2018. 9. 3.), ◇◇건설(주) 428일 경과(2019. 5. 2.), ▢▢건설(주) 203일 경과(2018. 9.19.), ◈◈건설(주) 189일 경과(2018. 9. 5.), ◫◫건영(주) 233일 경과(2018. 10. 19.) 하였다.

그 결과 사업시행자인 ▦▦병원의 건물과 대지에 하자[7]가 다수 존재하고 있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보증기관에 하자요구를 요구 할 수가 없는 등 적극적으로 하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 ◍◍◍의료원(주)의 하자보수보증서 보증 및 발급현황” 생략

4. 관계부서 의견

경기도의료원은 ▦▦병원 민간투자사업(BTL)의 직접 계약자가 아니므로 하자보수보증금 징구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기도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병원 시설사업의 준공검사와 준공 이후 하자보수를 포함한 유지관리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실로서 2019. 1. 14. 사업시행자인 ◍◍◍◍병원에 하자보수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2019. 2.2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하자 담보책임 1년차 최종 하자검사를 이행하였으며 현재도 담보책임기간이 남은 시설에 대한 하자담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장은

○ 앞으로「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대상 시설물의 준공 시 시설물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적기에 징구하여 하자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인사규정」에 따라「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7) 옥상, 3층과 1층 바닥에 백화현상, 균열, 곰팡이 현상, 벽면에 일부균열 / 건물 대지의 보도블록 일부 침하 보도측구와 공사가 불량하여 우기시 배수가 되지 않음

일련번호	45	감사자	○급 A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옥탑 음압실 배기덕트 FAN 흡입구 관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

조치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병원은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며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음압 시설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질병관리 본부 국가입원치료 병상 운영규정」제9조에는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병상의 적정 음압유지 여부 등 장비 및 물품등에 대한 평상 점검 및 보수 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질병관리 본부 정한 기준에 따라 철저히 행함으로써 위기 시 즉시 치료병상이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경기도의료원 ▦▦병원은 옥탑 음압실[8] 배기덕트 fan 흡입구 측 (FU 109

8) 음압실(陰壓室, negative pressure room)은 병원에서 병실 사이의 오염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격리 방식. 환기 장치를

~ 114까지) 선형 홈이 개방된 상태에서 납품받아 감사일 현재까지 보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HEPA FILTER FAN UNIT 내부 청소 유지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음압병실의 운영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향후 메르스 등 감염병환자 발생 시 입원치료병상 환자 감염병원체가 병원외부로 확산 대비에 대한 음압병실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그 림 〕 음악덕트 내부 사진



음압실 배기덕트 불량(원형표기 부분)	HEPA FILTER FAN UNIT 내부 청소 불량

4. 관계부서 의견

경기도의료원 ▦▦병원은 해당 설비의 납품 시 결로방지를 위하여 구멍이 존재하였으며 치료병상에 대한 음압실의 기압 관리를 점검하여 -2.5pa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 ▦▦병원장은

○ 음압실의 연결덕트의 개방부분을 차폐하고 내부청소를 실시하여 음압실의 기압과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사용해 방 안의 기압을 음압으로 유지함으로써 외부의 공기가 방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방의 공기가 밖으로 나갈 수는 없게 한다. 결핵, 홍역, 수두 메르스 따위 공기매개 접촉전염병 환자를 격리시킬 때 흔히 사용되는 방식.

일련번호	46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라병원 가과 (본부 나실)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 · 훈계 요구

제 목 **□□□□□기관 리모델링 공사계약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기도의료원 라병원 가과, 본부 나실

조 치 기 관 경기도의료원 본부 나실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라병원(이하 "라병원"이라 한다) 에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9]하고 있으며, 그 중 라병원 운영에 필요한 물품, 용역 등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경기도의료원 제규정집」내 Ⅴ.재무의 제7장 제7절 계약 제184조(관계법의 준용)에 따르면 계약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의 관련 조항을 준용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계약법」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9) 경기도의료원 회계규정 제84조(관계법의 준용)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의 결정) 제2항에 따르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추정가격 1억 이하 전문공사와 추정가격 8천만 원 이하인 전기 등 그 밖의 공사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제출을 통해 계약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추정가격 1억 이하 전문공사 등의 경우 3일 이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라병원에서는 "□□□□□기관 리모델링 공사계약"(이하 "리모델링 공사계약"이라 한다)에 대해 예정가격이하로서 견적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계약을 체결했어야 했고, 공사계약이 변동되었을 경우 다시 신규로 나라장터의 입찰공고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해 계약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라병원에서는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위해 2019. 1. 4.일 각 분야별 입찰공고(기초금액 &&&,&&&천원)를 실시하고 개찰결과 [표 1]과 같이 분야별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그 중 ▽▽분야를 제외하고 1순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기관 리모델링 공사(5개분야) 개찰결과 “생략”

그러나, ▽▽분야의 경우 [표 2]와 같이 △△이 1순위 업체로 낙찰되었으나, △△이 현장 방문 후 도면과 실제 공사범위 차이($$,$$$,$$$원)에 대한 증액 없이는 낙찰된 금액으로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라병원 시설팀에서는 △△의 의견과 도면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사금액 증액이 필요하다고 “□□□□□기관 리모델링 공사” 추진경과보고(2019. 1. 21.)를 하였다.

[표 2] □□□ □□기관 리모델링 공사(분야) 개찰결과 “생략”

그 후 낙찰자인 △△은 포기각서를 제출(2019.1.31.)하였고, 계약담당자는 2순위 ~ 5순위까지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가능여부 회신요청 공문을 시행(2019. 3. 13.)하였으나, 응답 업체가 없어 계약이 어렵게 되자 내부 추진방침을 라병원장에게 결재 받아 $$,$$$천원만큼 예정금액을 변경한 후 신규 입찰공고 없이 기존 투찰 업체만을 대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시행(2019.3.20.)하였고, 그 중 견적을 제출한 2개 업체 중 낮은 금액을 제출한 ◎◎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라 나라장터 공고 및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지 않음으로 다른 업체들의 입찰참여기회를 박탈하였고, 명확한 기준 없이 △△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청한 $$,$$$천원을 그대로 증액 계약함으로 입찰을 통한 계약절차를 따르지 않아 공사를 위해 필요한 적정한 사업비를 알 수 없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의료원 라병원에서는 도면과 실제공사범위차이로 계약 전 포기계약서를 제출한 업체의 의견과 다른 투찰업체들이 건축공사를 할 수 없다는 회신결과를 보고 재공고를 시행해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거라는 가과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 병원장의 추진방침을 받아 $$,$$$천원을 추가하였으며, 내부 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수의계약 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 계약을 적법하게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나라장터의 입찰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해야 했고, 시간 부족 등 내부 문제가 있더라도 관련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소멸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경기의료원 라병원장은

① 앞으로, 나라장터 공고 없이 수의계약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경기도의료원 회계규정」의 계약사무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62조의 2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일련번호	47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다병원 가과 (본부 나실)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 · 훈계 요구

제　　목　　**단일사업의 분할 수의계약 등 계약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기도의료원 다병원 가과, 본부 나실

조 치 기 관　　경기도의료원 본부 나실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다병원(이하 "다병원" 이라 한다) 에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10]하고 있으며, 그 중 다병원 운영에 필요한 물품, 용역 등에 대해 수의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경기도의료원 제규정집」내 Ⅴ.재무의 제7장 제7절 계약 제184조(관계법의 준용)에 따르면 계약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의 관련조항을 준용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10) 경기도의료원 회계규정 제184조(관계법의 준용)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5의 나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일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 총칙/ 5. 분할계약의 금지 "다" 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기준 제5장 제3절에 따르면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2천만 원이 초과되는 용역·물품 기타의 경우는 3일 이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여,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의료원에서는 ㄱ 등 2천만 원이 넘는 ★건의 계약에 대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어야 했고, "◇◇◇ 의료영상 원격판독 의뢰계약"(이하 "◇◇◇ 영상판독"이라 한다)을 상·하반기로 분할하여 체결하지 않았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다의료원에서는 [표]"수의계약 부적정 대상사업 현황"과 같이 "◇◇◇ 영상판독"에 대해 연간 계약 체결 시 예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계약해야하는데도 2016. 1. 1. ~ 2018. 12. 31.까지 매년 ★회로 나누어 동일업체(계약업체명: □□)와 분할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ㄱ 계약"($$,$$$천원)과 2018. 6. 15. 계약한 "◇◇◇ 영상판독"($$,$$$천원)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이 넘는데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ㄱ 계약" 및 "◇◇◇ 영상판독" 사업을 통합발주 하였다면 최저 낙찰하한금액이 $$$,$$$,$$$원으로 최대 $$,$$$,$$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함에도 수의계약 체결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었고, 관련 다수 업체들의 입찰참여 기회를 박탈하였다.

[표] 수의계약 부적정 대상사업 현황 "생략"

4. 관계기관 의견 : 의견 없음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장은

① 앞으로, 수의계약 비대상 사업을 수의계약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관련 법 등에 따라 단일사업을 분할하여 계약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경기도의료원 회계규정」의 계약사무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62조의 2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일련번호	48	감사자	○○○급 ○○○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6개 병원 가과 (감사실)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훈계 요구

제 목 **전산장비 구매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및 상용소프트웨어 부당사용**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가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감사실)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등 6개 병원에서는「경기도의료원 회계규정」제184조에 따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의 관련조항을 준용하여 계약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전산장비 구매업무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약 또는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인 (사)□□연합회(서울시 영등포구, 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계약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경기도의료원 회계규정」제184조의1에 따르면 의료원장 및 병원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조건, 위탁수수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저작권법」 제3조에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11]에 따라 보호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으며, 제124조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료원 산하 각 병원은 「지방계약법」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외부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할 때는 그 계약사항이 「저작권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이 끝나면 그 내용을 철저히 검사한 후 대가를 지급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 △△, △△ 등 4개 병원에서는 [표 1] “전산장비 구매계약 명세” 와 같이 ㄱ(◎◎◎◎◎◎◎◎용 DB서버 및 WEB서버 등을 도입하면서 ◇◇주식회사(서울시 강서구)와 계약체결 하였는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연합회가 2015년 지방의료원 전산장비 공동구매 계약을 체결한 업체라는 이유로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체결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

11) “세계저작권협약”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이 협약에 가입한 나라의 국민이 만든 저적물도 저작권 보호를 해주어야 함

[표 1] 전산장비 구매계약 명세 “생략”

나. 상용소프트웨어(ㄴ 및 ㄷ) 부당사용

한편, 위 [표 1]의 서버에는 외국인의 저작물인 ㄴ과 ㄷ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상용소프트웨어로서 저작권 소유기업의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인가를 받아야 한다.

(1) ㄴ 관련

△△△, △△, △△, △△ 등 4개 병원이 ㄱ용 DB서버 구매 시 참고한 2015년 연합회와 ◇◇㈜의 전산장비 공동구매 계약서에는 서버 세부규격으로 운영체제(OS) 64bit 설치와 ㄴ 64bit 설치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에도 64bit 운영체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계약이행 완료 후 ◇◇㈜가 제출한 설치완료 보고서에는 ㄱ 서버의 OS로 ㄷ 리눅스, DBMS로 ㄴ을 설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ㄷ 리눅스에 대한 라이선스만 제공받았을 뿐 ㄴ에 대한 라이선스는 제공받지 못하였는데도 위 4개 병원은 ㄴ 라이선스 사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과 △△은 2017년 연합회를 통해 전산장비를 공동구매 하였는데 2017. 5. 15. 연합회에서 시행한 지방의료원 전산장비 공동구매 신청기준에 따르면 DB서버 세부내역에 ㄴ 64bit 변경설치 및 마이그레이션을 포함한 64bit 전환 작업이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고, ☆☆☆☆(▽▽▽)가 별도 품목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위 병원에서는 DBMS에 대하여는 선택하지 않고 운영체제 64bit 전환 선택사항을 포함한 서버 1식과 저장장치 등 그 외 품목만을 선택한 신청서를 회신하였으나 입찰 등 절차진행 후 2017. 7. 5. 연합회로부터 통보된 전산장비 공동구매 사업 계약체결 내역에는 위 운영체제 64bit 전환은 신규 서버가 아닌 기존 서버에 대한 선택사항으로 위 병원의 계약에서 제외되어 있고, 납품될 DB서버에 설치될 DBMS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계약이행 완료 후 ◇◇㈜가 제출한 설치완료 보고서에는 ㄱ 서버에 DBMS로 ㄴ을 설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위 2개 병원은 라이선스 사용 적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위 6개 병원에서는 서버납품 검수일로부터 짧게는 2년 2월, 길게는 3년 11월이 지난 2019.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정당한 라이선스 취득 없이 상용소프트웨어인 ㄴ(ㄹ)을 설치하여 사용함에 따라 ★★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었다.

(2) ㄷ(OS) 관련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표 2]와 같이 서버 운영체제(OS)로 ㄷ 리눅스를 설치하면서 ▷▷의 서브스크립션 라이선스를 구매하였다.

한편, ㄷ 라이선스 정책에 따르면 서브스크립션 라이선스의 경우 서비스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이를 갱신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는 계약 중대 위반사항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표 2] ㄷ 라이선스 현황 "생략"

그런데 위 6개 병원에서는 서비스 기간이 만료된 지 짧게는 1년 1월, 길게는 3년 10월이 지난 2019.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라이선스 갱신 없이 상용소프트웨어인 ㄷ 리눅스를 사용함에 따라 ▷▷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었다.

4. 관계기관 의견

가.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 △△△, △△, △△, △△ 등 4개 병원에서는 2015년 연합회의 "지방의료원 전산장비 공동구매 사업 계약서" 제13조 제1항[12]에 따라 연합회 회원병원으로서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계약서가 법령을 우선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용소프트웨어 부당사용 사항에 대하여 6개 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전산장비 관련 사업은 전문기관인 연합회에 위탁하여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서버 구매 당시 연합회나 계약업체로부터 ㄴ을 신규로 구입해야 된다거나 ㄴ 재설치에 따른 문제점 등과 관련된 사항은 듣지 못하여 ㄴ 라이선스 정책을 위반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8. 9. 5. 연합회가 시행한 "2018년 지방의료원 전산장비 공동구매 신청안내" 에 첨부된 ㄴ 라이센싱 안내문을 받고나서야 문제점을 알게 되었으며, 의료원 예산 형편상 2019년에는 라이선스 구매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2020년에는 예산을

12) 계약서 제13조(기타 세부사항) ① 본 계약을 통해 "갑(연합회)"과 "갑"의 회원병원 및 준회원병원을 당사자로 [붙임2]의 장비에 대해 "을(◇◇(주))"은 장비별 단가로 물품을 공급 할 수 있다.

확보하겠으며,

ㄷ 리눅스 역시 유지보수 사업을 연합회에 위탁하여 추진하다 보니 서브스크립션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2019년 유지보수 업체(주식회사 ♤♤)로부터 관련 설명을 듣고 나서야 라이선스 위반임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내년에는 무료 오픈소스로 운영체제를 대체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다만, 전산분야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진료시스템 운영과 각종민원 등 처리만으로도 업무가 매우 과중 실정으로 연합회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전산인력 충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합회에 계약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은 계약 이행에 대한 검사·감독 의무가 있고, 업무가 과중한 실정이라도 신규장비 도입에 대한 납품검사와 같은 예산이 투자된 업무를 우선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검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장은

○ 앞으로「지방계약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을 명백히 하며,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조건대로 이행되었는지 철저히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상용소프트웨어를 설치·사용할 때에는「저작권법」등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라이선스 취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계약 체결 및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에 대하여는「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일련번호	49	감사자	○○○급 ○○○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나팀 (감사실)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훈계 요구

제 목 **□□□□ 용역 계약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가본부 나팀)

조치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감사실)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가본부 나팀에서는 [표 1]과 같이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본부 및 6개 병원 □□□□ 용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한입찰 및 적격심사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 용역 계약 명세 “생략”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총칙의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따르면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 전에 사용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사례를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르면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발주부서가 규격서 등의 작성단계에서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사업수행에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 전에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가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위 용역 입찰공고 시 [표 2]와 같이 총 6종에 대한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발주 전에 해당 시스템의 제조사와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표 2]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대상 시스템 명세 "생략"

그 결과, 2019년의 경우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13] 17위 업체까지 내부정보 유출방지 시스템(ㄱ)에 대한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18위 업체가 최종 낙찰되는 등, 수년간 특정업체만이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었고, 다른 경쟁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하게 되었다.

4. 관계부서 의견

나팀에서는 관련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계약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장은

○ 앞으로, 계약업무 추진 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62조의2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별표] □□□□ 용역 개찰 및 적격심사 결과 명세 "생략"

13) 최저 낙찰하한률(87.745%) 미만인 업체를 제외하고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 실시

일련번호	50	감사자	○○○급 ○○○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가본부 나팀 6개 병원 다과 (감사실)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권고 요구

제 목 **개인정보 관리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가본부 나팀, 6개 병원 다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감사실)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본부 및 6개 병원은「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라 환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2. 개인정보 수집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등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정보주체에게 수집목적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고지하고,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한편, 경기도의료원 □□병원은 병원이전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실지협약서[14]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관리운영 업무를 지정받아 성과평가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시행자 및 운영자의 책임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2018년 7월 500명, 2019년 1월 50명, 2019년 6월 50명 등 총 3차례에 걸쳐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위 병원은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외부고객의 성명, 휴대폰번호를 설문서에 기입하도록 요청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목적만 고지했을 뿐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알리지 않았고 조사 참여자로부터 동의서도 제출받지 않는 등 개인정보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기준 미흡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당직전문의의 명단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응급실 내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직전문의를 둔 진료과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인 위 기관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취급

14) 제50조(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성과평가위원회는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동안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운영자의 책임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를 적절히 관리·감독하고,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맞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개인정보취급자인 직원들에 대하여 입·퇴사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면서 ○○병원은 입·퇴사자 모두에게 징구하고 있으나 □나 ◎◎·◇◇병원 등은 일부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본부 및 병원별로 개인정보취급자의 관리·감독 기준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다만,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위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시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등 내부 관리계획이 일부 관련 법령과 맞지 않게 수립되어 있다.
(다만, 물리적으로는 2년 이상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함)

또한 당직전문의 명단의 경우, 관련 규정에는 응급실 내부에 명단을 게시하여야 하고, 홈페이지에는 당직전문의를 둔 진료과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6개 병원 홈페이지에도 명단을 게시하는 등 내부 관리계획이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의사 이름을 공개하고 있다.

4. 관계부서 의견

본부와 각 병원 행정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앞으로 해당업무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으며, 관련법령에 맞도록 내부지침 등 제반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 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병원에서는 업무분장에 대한 의견으로 현재는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라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전문성에 한계가 있어 향후 전산담당자에게로 이관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장은

○ 앞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동의절차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관련 법령에 맞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개정하고, 직원의 보안서약서 징구기준과 당직전문의 명단 공개기준 등은 경기도의료원 본부와 각 병원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일련번호	51	감사자	○○○급 ○○○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통보 및 주의

제 목 **재산관리업무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조치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병원장은 의료원「재산관리규정」에 따른 부문재산관리자로서 각 병원의 재산의 취득,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 등 의료원 소속 재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의료원은 '☆☆☆☆☆☆ ☆☆☆☆'에 따라 2012.12.29.부터 현재까지 의료원의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에게 부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경기도의료원「회계규정」제112조(자산의 임대) 규정에 따르면 병원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사업수입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 유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재산관리규정」제19조(임대·무상대여), 20조(임대차계약서) 및에 따르면 재산관리자는 병원에 속하는 재산 중 그 본래의 용도, 재산가치 및 유지관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재산을 임대차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유상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6개 병원에서는 병원에 속한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 재산가치 및 유지관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산의 임대를 통해 사업수입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으며, 자산의 임대하기 위해서는 재산임대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차료가 명기된 임

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재산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경기도의료원 6개병원의 재산관리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표]의 '경기도의료원 6개병원 자동판매기 운영 현황(2016~2019년)'과 같이 6개병원에서는 '☆☆☆☆☆☆ ☆☆☆☆'에 따라 경기도의료원 ▥▥▥▥에게 운영권을 부여한 자동판매기 20대의 총 점유면적 ◐◐㎡ 에 대하여 현재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점유한 면적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 결과, 경기도의료원 ▥▥▥▥에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6개병원으로부터 임대한 자동판매기 20대의 총 점유면적 ◐◐㎡ 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표] 경기도의료원 6개병원 자동판매기 운영 현황(2016~2019년) : 생략

4. 관계부서 의견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 ☆☆☆☆에 따라 자동판매기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재산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 「재산관리규정」에 따라서 현재 경기도의료원 ▥▥▥▥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판매기 점유면적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시정)**

○ 경기도의료원 ▥▥▥▥에서 사용한 자동판매기의 점유면적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통보)**

○ 앞으로 병원에 속한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여 관리하는 재산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52	감사자	○○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 ⊙⊙병원 (라실)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훈계 요구

제 목 **구급차 운용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가과), 경기도의료원 ⊙⊙병원(나과, 다과)

조치기관 경기도의료원 (라실)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병원과 ◉◉병원에서는 「의료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시설기준[15]에 의거 "[표1] 구급차 운용현황" 과 같이 일반구급차 각 1대를 응급의료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표1] 구급차 운용현황 (생략)

2. ○○병원 구급차량 운행연한 만료에 따른 조치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구급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9년[16]으로 하고, 법률 시행(2015. 7. 28.) 당시 운행 중인 구급차에 한해서 2016. 7. 28. 까지 유예기간[17]을 적용해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및 제44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15)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종합병원) : 구급차동차 1대

16)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또는 차령이 연장된 구급차의 경우 매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을 전제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

17) 부칙<법률 제13106호, 2015. 1. 28.>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구급차의 운행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구급차는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는 운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

따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운행연한이 초과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소 신고를 하야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2조에 따르면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는 300만 원 이하[18]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료원 ○○병원에서는 차령이 만료 된 구급차는 유예기간 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신속히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를 완료한 후 구급차 등을 운용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경기도의료원 ○○병원에서는 아래의 "[표2] 구급차 교체 흐름표"와 같이 2016년 4월 실시된 경기도 종합감사를 통해 자체 구급차의 차령 만료 사실을 인지하고도 유예기간 내 구급차 교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없이 약 4개월이 지난 2016. 8. ○.에서야 '국·도비 구입 대상 장비 변경 결정을 위한 장비심의회'를 개최하였고 2016. 8. ○. 장비변경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차령만료에 따른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표2] 구급차 교체 흐름표 (생략)

그 결과 2016. 7. 28. 차령 초과 구급차의 운행이 중단된 날로부터 신규 구급차량의 구입 및 신고수리가 완료된 2017. 1. ○.까지 5개월 이상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미충족 함은 물론 2017. 1. ○.에는 신고 되지 않은 구급차량을 이용해 전원환자 A를 ◎의료원으로 이송함으로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되었다.

다. 관계부서 의견

경기도의료원 ○○병원에서는 구급차량 구입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 일정이 9월말 ~ 10월 초순경으로 예상되어 8월경에 장비심의회를 개최 및 국도비 기능보강사업 잔액 변경을 통해 구매를 진행하였고 당시 의료기관인증평가 준비 등으로 신속한 업무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유예기간 만료 시 자체 구급차량의 운행 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구급차량의 신속한 구입을 위한 계획수립 등 적극적인 조치 없이 약 5개월 뒤에 있을 추경 편성 일정에 따라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은 구급차 구매 지연의 불가피한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

18) 과태료 부과기준 2.개별기준 마. 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구급차등을 운용한 경우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2. 구급차량 이송처치료 청구 부적정

가. 관계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3]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따르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환자가 실제 탑승한 거리에 대한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5항 ‘[별표17]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관리 기준’에 따르면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요금미터장치를 사용하여 운행하여야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의료법」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료원 ○○ · ⦿⦿병원에서는 자체 구급차를 이용해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요금미터장치를 사용하여 실제로 탑승한 거리에 따라 의료기관 일반구급차 기준(기본요금 30,000원)을 적용해 이송처치료를 청구하고, 본인부담금인 이송처치료는 관할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면제 또는 할인 하여서는 안되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병원 가과에서는 병원 내 각 부서에 ‘구급차 이용안내 홍보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의료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요금기준을 강조 표시하여 잘못 안내하였고, “[별첨1] 경기도의료원 ○○병원 구급차 이송처치료 청구 부적정 내역”과 같이 ‘17. 1. ◎. ~ ‘18. 10. ★.까지 12명의 이송환자에게 요금미터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퇴원 시 사전에 이송처치료를 청구하면서 요금기준은 비영리법인 특수구급차(기본요금 50,000원)로 잘못 적용하였으며, 환자 2명에게는 정확한 사유 없이 이송처치료를 청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아래의 “[별첨2] 경기도의료원 ⦿⦿병원 구급차 이송처치료 청구 부적정 내역”과 같이 ‘16. 4. ◆. ~ 감사일 현재까지(19. 10. ◇.) 93명의 환자를 이송하면서 요금미터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10km초과 거리에 대한 추가요금 청구 없이 관내 이송환자는 일괄 기본요금만 청구하는 등 구급차 이송처치료 청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의료원 자체 구급차를 이용한 107명의 이송 환자에 대한 이송처치료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과 맞지 않게 청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장은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차 운용 및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구급차 운용 및 관리업무를 부적정 하게 한 아래 관련자를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62조의2(훈계 등 처분)에 따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별첨1] 경기도의료원 ○○병원 환자이송처치료 청구 부적정 내역(생략)

[별첨2] 경기도의료원 ⊙⊙병원 환자 이송처치료 청구 부적정 내역

일련번호	52-1	감사자	○○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부과	재정상 조치금액	1,000,00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 (□□시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통보

제 목 구급차 신고 전 환자이송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가과)

조치기관 □□시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병원에서는 「의료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의거 "[표1] 구급차 운용현황" 과 같이 일반구급차 1대를 응급의료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표1] 구급차 운용현황 (생략)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구급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9년[19]으로 하고, 법률 시행(2015. 7. 28.) 당시 운행 중인 구급차에 한해서 2016. 7. 28. 까지 유예기간[20]을 적용해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및 제44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2조에 따르면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는 300만 원

19)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또는 차령이 연장된 구급차의 경우 매 6개월마다「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을 전제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

20) 부칙<법률 제13106호, 2015. 1. 28.>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구급차의 운행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구급차는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는 운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

이하[21]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료원 ○○병원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를 한 후 구급차 등을 운용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경기도의료원 ○○병원에서는 아래의 "[표2] 구급차 신고 전 환자 이송내역" 과 같이 2016. 11. ◇. ○○시로부터 차령 만료 구급차량에 대한 직권말소 사실 통보를 받은 후 신규 구급차량에 대한 운용 신고서를 제출(2016. 1. ★.) 하기도 전인 2016. 1. ◆. 자체 구급차량을 이용해 전원 환자 A를 △△의료원으로 이송함으로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의2 제2항을 위반하게 되었다.

[표2] 구급차 신고 전 환자 이송내역 (생략)

조치할 사항 □□시장은

경기도의료원 ○○병원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을 통보하오니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1) 과태료 부과기준 2.개별기준 마. 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구급차등을 운용한 경우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일련번호	53	감사자	○○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 가과, 나과 (다실)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 요구

제 목 **사용 후 잔여 마약류 폐기절차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 (가과, 나과)

조치기관 경기도의료원 (다실)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병원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병원 「마약류 관리 지침」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취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관리자(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는 폐기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2018. 4.)에 따르면 ‘사용 후 남은 마약류[22](이하 ‘잔여 마약류’라 한다)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 후 폐기량’으로 입력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중화 · 가수분해 · 산화 · 환원 · 희석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켜 자체폐기한 후 사진 등 그 근거자료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병원 「마약류 관리 지침」(2016. 1 .4.) 제16조에 따르면 간호사는 주사용 마약류의 잔량이 있을 때에는 약품명 등을 기록하여 가과에 반납하고

22)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 마약류취급업자의 처방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 또는 조제하고 남은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관리약사는 반납마약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며, 가과장은 매달 잔여 마약류를 마약류 별로 집계하여 나과장의 입회하에 사용한 용기는 적출물로 소각업체로 보내고 모아진 폐액은 라과에 있는 폐수처리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한다고 되어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해의료폐기물 중 손상성폐기물[23]과 액체상태의 폐기물은 합성수지류 상자형 전용용기에 배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의료폐기물은 봉투형용기와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 배출 등 분리 배출하되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손상성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24]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료원 ○○병원에서는 약제과로 반납된 잔여 마약류를 폐기 할 때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키는 등 ○○병원 「마약류 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발생 된 손상성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의료 폐기물과 혼합배출 되지 않도록 합성수지류 상자형 전용용기에 처리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경기도의료원 ○○병원에서는 [표] "잔여 마약류 폐기현황(2018년 7월 ~ 2019년 9월)" 및 "[별첨1] 경기도의료원 ○○병원 잔여 마약류 자체폐기 사진"과 같이 2018. 7. ◉.부터[25] 2019. 10. ▣.까지 16차례에 걸쳐 모르핀 등 6,605건의 잔여 마약류를 자체폐기하면서 희석 등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생략한 채 마약류가 들어있는 주사기(주사바늘 포함) 그대로 일반의료폐기물용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 배출하였고, "[별첨2] 잔여마약류 폐기 및 의료폐기물 수거일 현황"과 같이 폐기물 수거업체에서 수거해 가기 전까지 길게는 2~3일간 다른 의료폐기물들과 함께 폐기물 창고에 보관하였다.

---

2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2] 의료폐기물의 종류" 위해의료폐기물 중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24) [별표8]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 :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바) 그 밖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3) 지정폐기물의 경우 - 1차 위반 400만 원, 2차 위반 600만 원, 3차 위반 1,000만 원

25) 2018. 6. 5.까지는 ○○병원 「마약류 관리지침」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폐기

[표] 잔여 마약류 폐기현황(2018년 7월 ~ 2019년 10월) (생략)

그 결과 「폐기물관리법」의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함은 물론 경기도의료원 ○○병원 「마약류 관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손쉽게 개봉이 가능한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 잔여 마약류를 배출함으로써 마약류 폐기관리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게 되었다.

4.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의료원 ○○병원 가과에서는 잔여마약류에 대하여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업체를 통해 소각처리하고 있으나 골판지류 박스형 용기에 배출 시 보관기간 중 손쉽게 개봉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방법을 개선하고 「마약류 관리 지침」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경기도의료원 ○○병원 나과에서는 주사기 보호 캡을 씌운 상태로 배출하여 찔림 사고나 용기손상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손상성폐기물로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전용용기(합성수지류) 사용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장은

○ 앞으로 「폐기물관리법」 및 ○○병원 「마약류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잔여마약류 폐기 등 마약류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첨1]

경기도의료원 ○○병원 잔여 마약류 자체폐기 사진(생략)

[별첨2]

잔여 마약류 폐기 및 의료폐기물 수거일자

일련번호	53-1	감사자	○○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부과	재정상 조치금액	4,000,00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통보

제 목 **손상성폐기물 보관 기준 및 방법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가과, 나과)

조치기관 □□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병원에서는 병원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 등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해의료폐기물 중 손상성폐기물[26]과 액체상태의 폐기물은 합성수지류 상자용 전용용기에 배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의료폐기물은 봉투형용기와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 배출 등 분리 배출하되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손상성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27]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료원 ○○병원에서는 가과로 반납된 잔여 마약류를 폐기 할 때

---

2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2] 의료폐기물의 종류” 위해의료폐기물 중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27) [별표8]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 :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바) 그 밖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3) 지정폐기물의 경우 - 1차 위반 400만 원, 2차 위반 600만 원, 3차 위반 1,000만 원

○○병원 「마약류 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발생 된 손상성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의료 폐기물과 혼합배출 되지 않도록 합성수지류 상자용 전용용기에 처리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경기도의료원 ○○병원에서는 "[별첨] 경기도의료원 ○○병원 잔여 마약류 자체폐기 사진" 과 같이 2018. 7. ⊙.부터 2019. 10. △.까지 16차례에 걸쳐 잔여 마약류를 자체폐기하면서 주사바늘과 주사기를 손상성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분리하지 않고 일반의료폐기물용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 혼합하여 처리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의료원 ○○병원에서는 주사기 보호 캡을 씌운 상태로 배출하여 찔림 사고나 용기손상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손상성폐기물로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전용용기(합성수지류) 사용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경기도의료원 ○○병원에 대한 의료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하오니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경기도의료원 ○○병원 잔여마약류 자체폐기 사진 (생략)

일련번호	54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병원 (가실)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통보

제　　목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기도의료원 ○○ · □□ · △△병원

조 치 기 관　경기도의료원 본부(가실)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 · □□ · △△병원에서는 2019. 5. 1.부터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 · 관리 방침」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촬영 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료원 ○○ · □□ · △△병원에서는 수술실 CCTV 촬영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수술실 CCTV 촬영하여야 했고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실 CCTV 촬영하지 않아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경기도의료원 ○○ · □□ · △△병원에서는 2019. 5.부터 2019. 9.까지 [표] “정보주체 동의 현황”과 같이 각각 ●건 중 ◆건, ★건 중 ▲건, ●건 중 §건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아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수술실 CCTV 촬영하였다.

[표] 정보주체 동의 현황 “생략”

또한 경기도의료원 ○○병원에서는 수술실 CCTV 촬영에 동의한 환자 A를 2019. 9. 17.에 수술하면서 CCTV 촬영하지 않았고 수술실 CCTV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환자 B를 2019. 9. 20.에 수술하면서 CCTV 촬영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술실 CCTV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 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동의 여부에 따라 CCTV 촬영이 될 수 있도록 수술실 CCTV 운영 체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55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병원 (가실)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 · 훈계 요구

제 목 **◎◎◎◎◎ 위탁처리 용역 계약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기도의료원 ○○ · □□병원

조 치 기 관 경기도의료원 본부(가실)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 · □□병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 위탁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경기도의료원「회계규정」제18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 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따르면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26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료원 ○○병원에서는 입찰을 통해서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찰참자자격을 부당한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도 경기도의료원 ○○병원에서는 2018. 10. 19.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2019년 ◎◎◎◎◎ 위탁처리 용역 시장조사를 하면서 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2018. 12. 12. “2019년도 ◎◎◎◎◎ 위탁처리 용역 입찰 공고”하면서 시장조사 시 견적서를 제출한 2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고 재공고입찰 시 무응찰로 입찰이 성립되지 않자 시장조사에 참여한 업체인 ○○ 소재 △△과 계약금액 ■만 원으로 2019. 1. 16. 2019년도 ◎◎◎◎◎ 위탁처리 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3.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 용역,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28]과의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인 용역, 재공고입찰 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지 아니하고 1인 견적으로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료원 □□병원에서는 유형별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했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그런데 경기도의료원 □□병원에서는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자활기업 · 마을기업에 해당되지 않은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인 용역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하는데도 [표]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1인 견적을 받아 ☆☆과 계약금액 ●만 원으로 2016. 12. 19. 2017년 ◎◎◎◎◎ 위탁처리 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 2인 견적을 받아 ☆☆과 계약금액 ▲만 원으로 2017. 12. 8. 2018년 ◎◎◎◎◎ 위탁처리 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추정가격 5,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통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시장조사 공고 및 재공고 시 1개

28)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됨

업체만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1인 견적을 받아 ☆☆과 계약금액 ◆만 원으로 2019. 1. 23. 2019년 ◎◎◎◎◎ 위탁처리 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수의계약 현황 "생략"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확인하였고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 원장은

○ 앞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 용역 계약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주의)**

○ 관련자를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62조의2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일련번호	56	감사자	○○급 ☆☆☆		공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 의료원 가병원, 나병원, 다병원 (라실)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훈계 요구

제 목 **미수금 결손처분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기도의료원 가병원, 나병원, 다병원

조 치 기 관 경기도의료원 본부(가실)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의료원에서는 미수금을 의료서비스 여부에 따라 의료미수금과 기타미수금으로, 진료형태에 따라 외래미수금·재원미수금·퇴원미수금으로, 환자종류에 따라 기관미수금·본인부담금미수금으로 분류·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경기도의료원「회계규정」 제52조(납입통지서의 발행), 제53조(납입의 독촉), 제55조(불납한 경우의 처리)에 따르면 수입담당은 납입의무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하고,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의무자에게는 7일 이내 독촉장을 발행하여야 하며, 수차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175조와 제179조에 따르면, 병원의 채권은 진료행위에 의한 징수결정으로 발생한 의업미수금으로 매 사업년도 말에 행하는 미수금의 실지조사는 미수금조서를 작성하여 채무자별로 지급능력과 의사의 유무를 확인하는 직접 확인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채권(미수금) 관리 지침」에 제9조와 제10조에 따르면, 당일 진료비 미수납액을 점검하여 최대한 미수금 발생을 억제하고,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개이부담금을 수납처리하지 못하였을 때는 담당자는 원무과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경기도의료원 진료비 지원대상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가능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제11조에 따르면, 미수금 회수관리와 관련하여 전화 독촉 후 약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장을 발송하고, 수차례에 걸쳐 미수금 납부독촉을 하여도 응하지 않는 환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는 현지 출장하여 가정환경을 조사하고 체납 진료비의 납부를 독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20조에 따르면, 계속적인 입금독촉에 불응하여 상당한 기일이 경과되었고, 미수금액이 출장비나 법적처리의 예상비용보다 적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회수불가능한 미수금 등은 대손처리(결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입원 및 외래환자 등으로부터 발생한 미수금을 관리함에 있어 현지 출장 등 규정과 절차에 따라 채권확보 및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진료비 채권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할 동안 유선 및 내용증명서 등을 통하여 납부를 독려하였을 뿐, 미수금을 납부를 위한 출장이나 현지조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아래와 같이 미수금을 결손처분 하였다.

[최근 3년간,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 결손처분 현황] (생략)

특히, 연도별 결손현황표에 따르면 채무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다거나, 진료 후 도주하였다거나 모친이 수납을 거부한다는 등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미수금 확보를 위하여 노력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 결과,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제적인 확인 ·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최근 3년간 ◎◎◎**원**의 미수금이 결손처분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의료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현지조사 및 재산조회는 현재의 인력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전담인력 충원 요청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장

수원병원 등 각 병원장은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미수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경기도의료원 「회계규정」 및 「채권(미수금) 관리지침」에 따른 채권의 독촉 및 결손처리 등 의료미수금의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일련번호	57	감사자	○○급 ☆☆☆		공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의료원 (가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 요구

제 목 **보조금 사업 정산 소홀**

소 관 기 관 경기도의료원 가부

조 치 기 관 경기도의료원 가부 나실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가부(◇◇◇팀)에서는「지방재정법」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민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 및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제32조의6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5조, 제26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보조금을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적정 추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 2개월 이내에 경기도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정산보고를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경기도의료원 본부에서는 무료이동진료사업과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이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2016년, 2018년 ◎◎◎사업의

경우 각각 2017. *. **, 2019. *. **에 경기도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8년 □□□ 사업은 2019. *. **에서야 경기도로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실적보고 제출일] (생 략)

그 결과,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실적보고가 늦어짐으로써 정산확정을 통한 집행잔액 반납도 늦어지게 되어 예산편성을 통해 다른 용도로 적시에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하게 되었다.

관계부서 의견 경기도 의료원에서는 보조금 사업 업무 미숙지로 발생된 사항으로 향후 정산보고 등 보조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 보조금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정산 보고를 신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58	감사자	○○급 ☆☆☆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의료원 (가병원)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훈계 요구

제 목 **진료비 감면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가병원)

조치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가병원)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의료원 가병원 나과에서는 병원에서 하는 의료수가 및 제사용 요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경기도의료원「의료수가관리규정」제7조(제요금의 감면)에 따르면 사회공익상 필요하거나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제요금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할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병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기타 병원장이 합당한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제요금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병원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본인부담금 감면 지침」제4조(진료비 감면 세부내용)에는 진료비 감면대상 및 감면율에 대한 세부내역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장은 진료비 감면 등 제요금에 대하여「의료수가관리규정」및「본인부담금 감면 지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진료비 등을 부당하게 감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심의회 등을 거쳐서 처리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경기도의료원 가병원 나과에서는 2016. *월부터 2019년 *월까지 진료비를 징수하면서「의료수가관리규정」및「본인부담금 감면 지침」상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시설물에 의한 사고 · 식당에서 넘어짐 · 주차봉추돌사고 · 진료불만 및 부작용을 이유로, 해당 민원 및 사고 등이 의료원의 과실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별표와 같이 ★건 ◎◎천원의 진료비를 부적정하게 감면한 사실이 있다

[별 표] 진료비 감면 현황 (생 략)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의료원 가병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지침과 해당여부를 검토하는 등 진료비 감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 가병원장은

진료비는「본인부담금 감면 지침」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시고, 앞으로는 부적정하게 감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진료비는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감면토록 해야 함에도 상기기간 중 감면사유 및 대상이 아닌데도 [별표]와 같이 부적정하게 감면처리토록 하는 등 부서장 및 담당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일련번호	59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 요구

제 목 **공무국외여행 업무 처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

조치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병원에서는 「경기도의료원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 및 「경기도의료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공무 국외여행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1) 「경기도의료원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에 따르면 소속 직원이 국외출장·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받아야 하며, 여행자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서식에 따라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경기도의료원 여비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국외여행자는 2주일 이내에 운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직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고, 회계관계 직원은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등으로 국외항공운임의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소속 직원의 국외여행 시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받고 귀국 후 20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항공권 사본 등으로 국외 항공운임의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1) 그런데도, 위 기관에서는 2016.4.부터 2019.8.까지 [표1] “공무국외여행 내역” 과 같이 총 3건의 국외출장을 하면서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득하지 않았으며, 출장자는 귀국 후 항공마일리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또한, 같은 기간 [표1] “공무국외여행 내역” 과 같이 총 4건의 국외출장 후 항공운임 지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운임 사후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공무국외여행의 적정성 검토 및 국외여비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절차대로 확인하지 않아 기관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계부서 의견

경기도의료원 ○○병원에서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 ○○병원장은

○ 앞으로, 소속직원의 국외업무 출장 시 공무국외여행심사, 항공마일리지 신고, 국외 항공운임 사후 정산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공무국외여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표1] “공무국외여행 내역” : 생략

일련번호	60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750,00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의료원 (○○, ◇◇병원, △△병원)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 · 훈계 요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 ◇◇병원, △△병원)

조치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 ◇◇병원, △△병원)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병원, △△병원)에서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1)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의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고,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추진비 현금 지출을 하여야 하고, 이외에는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또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의 축의·부의금품은 소속 상근직원 및 업무 유관기관 직계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의 경우에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한도액은 1건당 50천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축의·부의금품을 지급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1) 그런데도, 위 기관에서는 2016.4.부터 2019.8.까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표1]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내역" 과 같이 총 7건 3,4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표2] "업무추진비 계좌이체 지급내역" 과 같이 총 31건, 3,165,0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출하였다.

(2) 또한,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언론관계자, 업무 유관기관으로 볼 수 없는 대상기관 등에 대해서 [표3] "축의·부의금 집행대상 부적정 내역" 과 같이 12건, 750,000원의 축의·부의금을 집행하였고, [표3] "축의·부의금품 집행대상 부적정 내역" 과 같이 9건, 450,000천원 상당의 축의 · 부의금품을 집행하였다.

그 결과, 업무추진비 총 59건, 7,775,000원을 예산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하였으며,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여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였다.

4. 관계부서 의견

경기도의료원 ○○에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병원에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지출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수술실 수술지연에 따른 식사비용 지급' 은 예고없는 수술시간이 연장되어 부득이하게 현금지출을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직원 부모의 회갑 축의금은 경기도의료원 단체협약 제101조(경조금의 지급)에 의거하여 지출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예산 집행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갑 축의금을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지 않은 다른 병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직원 부모의 회갑 축의금이 경기도의료원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지출하였다는 위 의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장, ◇◇병원장, △△병원장은

(1) 앞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시에는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법인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업무추진비 축의·부의금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집행하거나 집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표3] “축의·부의금 집행대상 부적정 내역”과 같이 업무추진비 축의·부의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업무추진비 12건, 750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2)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등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은「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표 1]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내역 : 생략

[표 2] 업무추진비 계좌이체 지급내역 : 생략

[표 3] 축의·부의금 집행대상 부적정 내역 : 생략

[표 4] 축의·부의금품 집행대상 부적정 내역 : 생략

일련번호	61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 ☆☆과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훈계 요구

제 목 **“○○○ 용역” 수의계약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 (☆☆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 (☆☆과)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과에서는 【표】와 같이 2016. ◇. ○○.부터 2018. ◇◇. ○○.까지 ◈회에 걸쳐 주식회사 ▤▤(대표:◇◇◇)와 “○○○ 용역”에 대해 1인 견적 수의계약(총계약금액 $$$백만 원)을 체결하였다.

[표] “○○○ 용역” 수의계약 추진현황 “생략”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경기도의료원 회계규정」 제184조(관계법의 준용)에 따르면 계약사무 처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예외적으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2018. 7. 24. 시행령 신설규정)「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과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에 따르면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해당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입증서류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

한편「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2조(정의),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제5조(심사요청), 제7조(심사결과)에 따르면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일반용역의 경우에는 입찰·계약을 하기 전에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 ☆☆과에서는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공사나 용역 등을 추진할 경우 수의계약 가능 금액, 수의계약 사유,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정금액 1억원 이상 일반용역의 경우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16년 □월경 “○○○ 용역”을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계약담당자가 “주식회사 ▤▤”로부터 제출받은 사회적기업인증서와 ○○○신고필증만 확인하고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은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업체가

사회복지법인에 포함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과장에게 위 업체와의 수의계약 검토사항에 대해 구두보고하고 전자결재를 득한 후 2016. ◇. ○○. 위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계약금액 $$$천 원)하는 등 【표】와 같이 2016. ◇. ○○.부터 2018. ◇◇. ○○.까지 ◇회에 걸쳐 “○○○ 용역”을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위 업체와 수의계약 금액 한도(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를 넘겨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총계약금액 $$$천 원)하였다.

더구나 “2016년 ○○○ 용역” 최초 계약 시 추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데도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채 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계약금액 $$$천 원)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위 업체에 부당한 특혜를 주었으며 다수 업체에는 공정한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

4. 관계부서 의견

△△병원 ☆☆과에서는 “주식회사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으로 판단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법리해석 오류와 판단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 △△병원장은

○ 앞으로, 수의계약 업무 시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62조의2 (훈계 등 처분)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일련번호	62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 ☆☆과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훈계 요구

제 목 **급식재료(부식류) 구매계약 시 적격심사 미이행**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 (☆☆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 (☆☆과)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과에서는 입원환자들의 급식지원을 위해 “급식재료(부식류) 구매계약” 업무를 추진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경기도의료원 회계규정」 제184조(관계법의 준용)에 따르면 계약사무처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물품구매의 경우 심사결과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 ☆☆과에서는 입찰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문 낙찰자 결정방법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병원 ☆☆과에서는 【표】와 같이 2017. ◇. ○○.부터 2019. ▨. ▼▼.까지 7회에 걸쳐 급식재료(부식류) 구매 계약을 추진하면서 입찰공고문에 적격심사 대상임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적격심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 입찰한 자를 그대로 낙찰자로 선정하는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급식재료를 적기에 납품 할 수 있는 공급업체의 이행능력과 급식재료 품질의 신뢰성 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표] “급식재료(부식류) 구매계약” 낙찰자 선정 시 적격심사 미이행 현황 “생략”

4. 관계부서 의견

△△병원 ☆☆과에서는 담당자의 업무미숙(규정 미숙지)으로 적격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며 추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 △△병원장은

○ 앞으로, 물품 구매계약 업무 시 법령에 따라 적격심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물품 구매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62조의2(훈계 등 처분)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일련번호	63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 ☆☆과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요구

제 목 **입찰공고 및 재공고 규정 미준수**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 (☆☆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 (☆☆과)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과에서는 병원 업무추진을 위한 물품의 구매 및 용역계약 업무를 추진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경기도의료원 회계규정」 제184조(관계법의 준용)에 따르면 계약사무처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최초 공고 후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고, 이 경우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입찰공고 후 입찰참가자격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최초 입찰공고 후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부칠 수 있으나 재공고입찰 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공고의 입찰참가자격 등의 조건을 변경하면 안 되며 만일, 최초 공고 후 입찰참가자격 등 변경사항이 있으면 최초 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병원 ☆☆과에서는 나라장터(G2B)에 "○○○ 용역" 시장조사 제출공고(2018. ◇◇. ○○. / ▨▨. ▼▼.) 및 최초 입찰공고(2018. ◇◇. ▼▼.)를 하면서 【표1】과 같이 입찰참가자격에 "⊙⊙⊙ 등 3개 자격을 보유한 업체, 예정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으로 명시하였으나 최초 입찰이 유찰(무응찰)되자 2018. ▨▨. ▼▼. 재공고 입찰(공고번호 제2018-◆◆호)을 하면서 최초 입찰공고와 다르게 입찰참가자격을 "○○○ 등 2개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변경하고 "예정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공고한 후 2018. ▧▧. △△. 중기업인 주식회사 ▤▤(대표:◇◇◇)과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 용역" 입찰참가자격 변경내역 "생략"

또한 위 기관에서는【표2】와 같이 "2018년 ▶ ~ ◇◇월 ◇◇ 구매" 계약을 추진하면서 2018. ◇. ◈◈. 입찰공고 후 2018. ◇. ○○. ▣▣ 주식회사(대표:△△△)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으나 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자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이전 계약포기 건과는 계약기간, 추정가격, 물품의 종류, 구입량 등이 달라 새로운 계약인데도 이전 계약 포기 건 입찰에 견적을 기제출하였던 주식회사 ◇◇◇ 등 9개 업체(▣▣ 제외)만 한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하였다.

그 결과 다른 업체들의 공정한 입찰 참여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

[표2] "2018년 ▶ ~ ⊙⊙월 ◇◇ 구매" 계약 추진현황 "생략"

4. 관계부서 의견

△△병원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인정하면서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추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 △△병원장은

○ 앞으로, 입찰공고(재공고)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64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의료원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 요구

제 목 **시설공사 등 계약 후 감독자 및 준공검사관 미 지정**
소 관 기 관 **경기도의료원**(******)
조 치 기 관 경기도의료원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의료원(******)에서는 각 병원의 유지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매년 소액의 시설공사 및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표 1] 경기도의료원 공사 · 용역 추진 현황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무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직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 물품 · 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부서에는 시설공사 공사·물품·용역의 계약 후 해당 계약 건에 대해 감독관을 지정하여 감독하게 하고 계약상대자가 그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준공검사관을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경기도의료원(******)에서는 2016년도부터 감사시점인 현재까지 공사 · 용역 등 총 000건에 대해 감독관임명 및 준공검사관을 임명하지 않고 공사 · 용역 계약 및 준공(검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경기도의료원의 행정절차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회계질서를 어지럽히게 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에서는 소액이나 소규모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 시 □□□의 관리감독하에 공사를 진행하여 별도의 감독관 지정이나 준공검사관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향후 지방계약법에 따라 감독관 및 준공검사관을 임명하여 공사 · 용역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① 경기도의료원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관계 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65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의료원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훈계 요구

제 목 **○○○○○ 이전 환경개선공사 등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기도의료원**(*****)

조 치 기 관 경기도의료원(*****)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의료원 *****에서는 2018. 0. 0.부터 0. 00.일까지 “○○○○○ 이전 환경개선공사(도급자 □□□□□, 도급액 금$$,$$$천원))”, 2019. 0. 00.부터 0. 00.일까지 ◎◎◎ ◎◎◎ 설치 공사를 추진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 제5호 착공·보고 가목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공사예정표,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 장비투입계획서, 착공 전 현장사진, 직접시공계획통보서,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등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되어있고

공사 설계 변경 시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제1호 설계변경 가목, 제3호 현장상태에 따른 설계변경 또는 제5호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등을 검토하여 공사의 설계를 변경토록 하고 있다

또한「지방계약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무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3절 대가의 지급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등 필요한 서류를 계약상대자에게 제출받은 후 대가를 지급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부서에는 시설공사 공사·용역의 계약 후 해당 계약 건에 대해 감독관을 지정하여 감독하게 하고 설계변경 필요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에 대해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변경계약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그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면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준공검사관을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경기도의료원 *****에서는 “2018년도 ○○○○○ 이전 환경개선공사”를 추진[공사기간 2018. 0. 0. ~ 0. 0.(00일)]하면서 2018. 0.월초(실제 계약일 알수 없음)[29] 계약을 체결하고 2018. 0. 00. 공사 완료 보고를 마쳤으나 2018. 0. 00. 계약완료 보고를 하는 등 시설공사의 절차와 처리를 무시하였으며 2018. 0. 00. 시설공사부서와 계약부서 간 협의, 검토 없이 공사 설계변경(당초 $$,$$$천원 → 변경 $$,$$$천원, 증 $,$$$천원)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공사 감독자 및 준공검사관을 임명 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준공 시에도 별도의 준공검사관을 임명하지 않은 채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경기도의료원의 행정절차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회계질서를 어지럽히게 하였다.

---

29) 공사표준계약서 상 계약 체결일 2018. 6. 3.

4. 관계기관 의견

경기의료원 *****에서는 시설공사 시 감독관 지정은 하지 않았으나, □□□의 관리 감독하에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 완료 후에도 시설팀의 최종 확인 검수 후 공사 완료 보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향후 감사지적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라 투명한 공사 · 용역 업무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① 경기도의료원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관계 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관련자에게는「경기도의료원 인사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일련번호	66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의료원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 요구

제 목 **소액 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기도의료원**(*****)

조 치 기 관 경기의료원(*****)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의료원 *****에서는 입원환자의 감염관리와 병문안 환경개선을 위하여 ◎◎◎◎◎ 구축 공사(도급액 : $$,$$$천원)를 2018. 0. 00. ~ 0. 00. 까지 추진한 사실이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명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할 경우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제1항과 제2항 및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안부 예규 제39호(2018.7.9.)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이때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

에 일정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수의 계약 안내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료원 *****에서는 해당 소액 시설공사를 수의계약 하려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일정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수의 계약 안내 공고하여 견적서를 받아 그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경기도의료원 *****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에서 직접 관련업체 3곳의 견적을 받아 그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제출한 주식회사 ☆☆☆(대표 ○○○)와 계약(2018. 0. 00.)을 체결하여 2018. 0. 00. ~ 0. 00. 까지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경기도의료원의 계약 및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경기의료원 *****에서는 당시 계약업무 보직 발령 후 첫 계약업무로 업무에 대한 지식과 진행능역이 원활하지 않았고, 병원인증평가와 복지부 고시에 따른 입원환자 안전관리비 산정기준에 의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계약업무 진행이 적절치 못했음을 인정하며 향후 법령과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 원장**은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관계 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67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의료원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훈계 요구

제 목 **시설공사 현장기술자 선임(배치)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기도의료원**(*****)

조 치 기 관 경기의료원(*****)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의료원 *****에서는 2016년부터 “◎◎◎◎ 기초공사” 등 00건의 병원 시설공사를 감사일 현재까지 매년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사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1항에는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시행령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하며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 도급계약당사자간

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 ·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공사 계약 후 착수와 동시에 건설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공사에 상응하는 현장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임된 현장 기술자의 자격 · 경력 등을 검토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경기도의료원 *****에서는 표1과 같이 2016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기초공사 등 0건의 시설공사에 대해서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않았거나 주 공정과는 무관한 현장기술자를 배치하는 등 시설공사 관리 ·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시설공사 현장대리인 부적합 목록 “생략”

그 결과, 해당 공사의 적정한 기술자가 배치되지 못하는 등 경기도 의료원의 공사에 대한 품질 저하의 우려가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경기의료원 *****에서는 추후 공사 계약에 관련한 서류 및 공사현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 원장**은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관계 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관련자에게는 「경기도의료원 인사관리규정」 제62조의2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일련번호	68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의료원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 요구

제 목 **◎◎◎◎◎공사 안전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미 정산**

소 관 기 관 **경기도의료원**(*****)

조 치 기 관 경기의료원(*****)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의료원 *****에서는 2016. 0. 0. ~ 0. 00.까지 ◎◎◎◎◎공사(도급액 금 $$,$$$원, 도급자 ㈜□□□□□)를 실시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제4항 규정에 따라 정산토록 되어 있다.

또한 공사 발주자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고 공사 수급인은 제7조(사용기준)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면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제9조(확인)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환경관리비) 제3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

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 따라 그 사용실적을 정산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료원 *****에서는 공사 준공 시 계약 서류를 확인하고 공사 내역서에 반영된 사항에 대해 안전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등의 집행 실적을 확인하여 정산 후 최종 준공금을 지급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경기도의료원 *****에서는 “◎◎◎◎◎공사” 완료 후 준공 시 설계내역에 반영된 안전관리비(금 $$$,$$$원) 및 환경관리비(금 $$$,$$$원)에 대해 그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정산하여야 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경기도의료원의 행정절차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회계질서를 어지럽히게 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경기의료원 *****에서는 추후 공사 계약에 관련한 서류 및 공사현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 원장**은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관계 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69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과 등 (△△과 등)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훈계 요구

제 목 **징계 처분자 호봉승급 누락 및 보수 지급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 등 3개 기관 (△△과 등)

조치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 등 3개 기관 (△△과 등)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병원(△△과) 등 3개 기관에서는 경기도의료원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직원의 호봉승급과 승급 제한 업무, 호봉에 따른 보수 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경기도의료원 「보수규정」 제8조(호봉승급기간) 및 제9조(정기승급)에 따르면, 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면서, 승급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1조(승급의 제한) 및 「인사규정」 제28조(승진 승급의 제한)에 따르면, 징계처분, 징계의결요구 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승급할 수 없으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강등·정직은 18월, 감봉은 12월, 견책은 6월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승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이 승급한 지 1년이 넘으면 정기 호봉승급을 실시하여야 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 승급을 제한하되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호봉승급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경기도의료원에서 2017년 9월 자체 실시한 ‘2017년 인사부문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병원 등에게 아래와 같이 시정 요구를 한 사실이 있다.(시정완료)

제목 : 징계처분 집행 종료 전 승급 부적정(발췌)

위법부당내용	◇◇병원에서는 2015.8.12. 감봉 3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4급 27호봉)에 대하여 징계처분기간을 포함한 15월인 2016.11.11.까지 승급을 제한하고, 2017.4.1. 차기 호봉승급(28호봉)을 실시하여야 했음에도, **2016.1.18. “2016년 1월 승급자 현황”을 보고하면서 승급제한 기간에 있는 직원을 승급시키고, 동년 1월부터 2016.3.21. ◎◎◎병원으로 전보되기 전까지 승급된 호봉을 적용하여 급여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병원에서는 2016년 4월부터 차기 승급월인 2017.4.1. 이전인 2017년 3월까지 전입된 직원에 대하여 **인사프로그램(ERP) 내 상벌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승급된 호봉을 적용하여 급여 $$$원(*$원 절사)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사항	「인사규정」 제28조 및 「보수규정」 제11조에 의거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 기간 동안 승급이 되지 있도록 **“주의”** 촉구 및 추가 지급된 $$$원을 환수하도록 **“시정”** 조치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경기도의료원 ◎◎◎병원 △△과에서는 상기 처분과 관련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2018년 4월 호봉승급(28→29호봉) 발령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30]하였고, 그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2018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병원 등 3개 병원(△△과 등)에서 1호봉 낮게 산정된 보수를 지급하여 총 $$$원의 보수를 적게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조치 완료 병원 제외)

[표] 징계 처분자 호봉승급 누락에 따른 보수 과소지급 내역 - 생략

30) ◎◎◎병원 △△과에서는 2017년 4월에도 호봉승급 발령을 누락하였으나, ◇◇병원 △△과에서 착오로 2016년 1월 호봉승급 발령(27→28호봉)함에 따라,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는 정상 호봉(28호봉)으로 적용되어 보수 등을 지급함

그 결과,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규정에서 정한 제한보다 과도한 제한을 하였으며, 그에 따른 보수 또한 부적정하게 지급되는 등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4. 관계부서 의견

경기도의료원 ◎◎◎병원 △△과에서는 호봉승급 발령을 누락시킨 사실은 인정하나, 보수 지급 업무 담당자는 인사발령 특이사항 등을 알 수 없어 호봉승급 업무 담당자가 산정한 호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였으며,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 ◎◎◎병원 등 3개 기관은

○ 경기도의료원 보수규정에 따라 1호봉 낮게 산정된 보수를 지급받은 징계 처분자에게 과소 지급한 보수 총 $$$원을 추가 지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하여 호봉승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 경기도의료원 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승급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62조의2(훈계 등 처분)에 따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일련번호	70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과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훈계 요구

제 목 **근무성적 평정대상자 분포 비율 부적정 등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 병원 (△△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 병원 (△△과)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 병원 △△과에서는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52조(평정점의 분포비율) 제1항 및 제00조(근무성적 평정방법) 제8항 제1호에 따르면, 근무성적의 평정은 평정대상자를 직급별로 수(2할), 우(4할), 양(3할), 가(1할)의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하고, 평정결과 평정대상자 전체 분포 비율이 부적정하여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00조(근무성적 평정방법) 제3항 및 제55조(확인 및 보고) 제1항에 따르면, 평정자와 확인자는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 평정자의 총 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제출된 근무성적 평정표에 대하여 규정에 맞게 평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재작성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제52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보완지침[31]에 따르면, 직종별, 직급별 피 평정자가 4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평점비율을 적용하는 한편, 3사람인 경우에는 수 등급 1명, 우 등급 1명, 양 또는 가 등급 1명으로 평정하고, 2사람인 경우에는 가 등급을 제외한 수·우·양 등급으로 하되 중복되지 않게 구분하며, 1사람인 경우에는 수·가 등급은 적용하지 않고 우·양 등급 중에서 평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① 평정결과 평정대상자 전체 분포 비율이 부적정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하며, ② 인사부서의 장은 피 평정자의 총 평정점이 동일하게 부여되는 등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재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경기도의료원 ○○○ · ●● · ◎◎ 병원 △△과에서는 ①[별표 1]과 같이 최근 2년간(4회) 평정결과 평정대상자 직급별 전체 분포 비율이 부적정함에도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였고, ②[별표 2]와 같이 최근 2년간(4회) 평정결과 같은 직종·직급의 직원 간 총 평정점이 동일하게 부여되었음에도 재작성하게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부적정한 직급별 분포 비율과 같은 직종 · 직급의 직원 간 동일한 평정점이 반영된 평정결과를 승진 등의 인사운영에 반영하였으며,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였다.

4. 관계부서 의견

경기도의료원 ○○○ · ●● · ◎◎ 병원 △△과에서는 병원 특성상 다양한 직종 · 직급의 직원이 있고 그에 따라 1 · 2차 평정자, 확인자 또한 다양하게 되어 있어 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 ○○○ · ●● · ◎◎ 병원은

---

31) 근무성적평정 평점비율 관리 철저(경도의 행정-000, 0000.00.00.)

○ 앞으로,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에 따라 평정점의 직급별 분포 비율을 준수하고 같은 직종·직급의 직원 간 평정점의 차이를 두는 등 규정을 준수하여 근무성적 평정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에 따른 근무성정 평정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62조의2(훈계 등 처분)에 따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별표 1] 최근 2년간 평정대상자 전체 비율 부적정 내역 - 생략

[별표 2] 최근 2년간 총 평정점 동일 부여 현황 - 생략

일련번호	71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환수, 추급	재정상 조치금액	환수 $$$원 추급 $$$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과 등 (◆◆과 등)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 요구

제 목 **징계 처분자 및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등 6개 기관 (◇◇과, △△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등 6개 기관 (◆◆과, △△과)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등 6개 기관 ◇◇과(△△과)에서는 경기도의료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따라 상근임원 및 직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경기도의료원 「보수규정」제25조(정근수당) 및 제39조(준용)에 따르면, 임직원에게는 근무년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구분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0조(수당의 지급)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정근수당)에 따르면, 정근수당은 지급대상기간(1월 : 전년도 7월 1일~12월 31일, 7월 : 당해연도 1월 1일~6월 30일)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휴직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월할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제3호의2의 규정(「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제4호[3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에 의한 휴직기간(이하 “유급 육아휴직기간”이라 한다)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한편,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62조(징계의 종류)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63조(징계량의 효력) 제1항 제4호 및 「보수규정」 제18조(결근자 등의 보수) 제5항에 따르면,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를 삭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33]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①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한도로 하여 감액 지급하여야 하고, ② 지급대상기간 중 복직한 경우 지급대상기간 중 휴직기간은 제외한 후 월할 지급하여야 하지만, 유급 육아휴직기간이 끝나고 복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실제 근무한 기간을 보아 지급대상기간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32) **제63조(휴직)**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33) 통상임금(기본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가산금, 위험수당, 기술수당, 의료업무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가족수당)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봉급조정수당, 상여금, 당직수당, 보건수당, 연월차보전수당, 대우수당, 관리업무수당, 직위수당, 전문물리치료수당 등을 합치고, 여기에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합친 금액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① 경기도의료원 등 4개 기관 ◇◇과(△△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지급대상기간 중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1]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 처분자에 대한 정근수당 지급내역 - 생략

또한, ② 경기도의료원 ○○병원 등 5개 병원 △△과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유급 육아휴직기간을 지급대상기간에서 제외한 후 월할 지급함에 따라, ▽▽▽ 등 00명의 정근수당 총 $$$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정근수당 월할 지급 내역 - 생략

그 결과, 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정근수당을 감액하지 않은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징계처분을 받지 않는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을 저해하였고, ② 유급 육아휴직기간을 마치고 복직한 직원에 대하여 월할 계산하여 과소 지급함으로써 불이익을 주었으며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34]의 육아휴직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계부서 의견

① 경기도의료원 보수규정 제39조(준용)에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나, 인사규정 제63조(징계량의 효력) 및 보수규정 제18조(결근자 등의 보수)에서 정직, 감봉 등 징계관련 보수 삭감규정이 명확하게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에도 감액 한도가 정하여져 있다.

또한, 위 규정에 따른 감봉 시 삭감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 및 평균임금에 정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기지방고용노동경기지청 자문결과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보다 불리하게 정한 내부 규정은 당연

34)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38조(휴직)** ②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에 의한다.

무효로써 효력이 없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는 회신[35]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료원 등 4개 기관 ◇◇과(△△과)에서는 의료원 규정에 있는 삭감 규정 외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중 삭감일 뿐만 아니라, 의료원 규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근수당이란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노고를 보상하는 취지에서 지급되는 수당으로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 처분을 받아 수당의 감액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봉급의 지급액을 감하는 감봉과는 다르며 규정 또한 별도로 정하고 있고, 특히 징계 관련 보수 삭감규정을 명확히 정한 다른 규정과 달리 정근수당 규정에서는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사항이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경기지방고용노동경기지청에서 회신한 사항은 경기도의료원 기준(감봉의 경우 기본급의 5분의 1 등)과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달라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이 건과 사안이 다르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면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감액 한도를 준수한다면 과도한 감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규정에서 감급제한 1일분과 1임금 지급기의 제한액을 이중적으로 제한하였을 뿐 그 사유와 연관하여 제한을 하지 않았으므로, 1개 사유의 경중에 따라 이중적 제한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감급할 수 있다.[36]

그러므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중삭감일 뿐만 아니라, 의료원 규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위 의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경기도의료원 보수규정 제25조(정근수당)에는 육아휴직 관련 별도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같은 규정 제16조(휴직기간 중의 보수) 제4항에는 '인사규정 제38조 제2항의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복무규정 제24조 제6항의 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 되어 있으며, 현재 의료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무급(고용노동부에서 본인에게 직접 지원)으로

35) 근로개선지도1과-000, 0000.00.00.
36) [네이버 지식백과] 감급의 제한 [減給- 制限]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운영되고 있으므로, 정근수당을 산정할 때 지급대상기간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육아휴직기간 중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보수규정에 맞지만, 복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상기 주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정근수당 규정에 육아휴직 관련 별도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준용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그 기준에 따라 일부 담당자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전액 지급한 사실[37]이 있다.

또한, 비록 의료원에서 육아휴직 기간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본인에게 직접 지원하므로 이를 무급 육아휴직기간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38조(휴직) 제2항 및 제40조(휴직의 효력)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1년은 근무연수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고, 복무규정 제24조(연차휴가) 제9항에서도 육아휴직기간 1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등을 산정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에서도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38]된 것을 보더라도, 경기도의료원 보수규정에서 준용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 중 유급 육아휴직기간을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보아 지급대상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정근수당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위 의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 등 6개 기관은

○ 경기도의료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①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총 00명)의 정근수당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한도(총 $$$원) 내에서 감액하여 환수하시고, ② 유급 육아휴직기간을 지급대상기간에서 제외한 후 월할 지급함에 따라 ▽▽▽ 등 00명에게 과소 지급한 정근수당 총 $$$원을 추가 지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하여 보수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

37) ◎◎병원 ▼▼▼ 등

38) 육아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일련번호	72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과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훈계 요구

제 목 **진료비 등 제요금 감면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 (⦿⦿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 (△△과)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병원 ◉◉과에서는 경기도의료원 「의료수가관리규정」 등에 따라 의료수가 및 제 사용요금[39]을 결정·징수·감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경기도의료원 「의료수가관리규정」 제7조(제요금의 감면)에 따르면, 사회공익상 필요하거나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제요금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할 경우에는 병원장의 승인에 의하되 이에 따른 입증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기타 병원장이 합당한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의 해당자에 대하여 제요금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병원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감면 지침」에 따르면, 진료비 등에 대한 감면 적용범위는 진료비와 장례식장 이용비용에 한하여 적용하고, 감면 대상과 감면율에 대한 세부내용을 별첨으로 정하고 있으며, 2015.9.15. 감면 지침이 개정[40]되면서 직원의 형제·자매에 대한 감면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진료비 등 제요금을 감면을 할 경우 「의료수가관리규정」 및 「진료비 등

39) 병원에서 징수하는 입원료, 약가, 수수료, 주사료, 검사료, 처치료, 진찰료, 방사선촬영료, 제증명 수수료 등 진료행위 및 부대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수가를 말함

40) 경도의 기획-000

본인부담금 감면 지침」에서 정한 감면 사유와 대상, 감면율을 철저히 확인하여 진료비 등 제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경기도의료원 ◎◎병원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진료비 등 제요금을 징수·감면하면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 자매의 장례식장 이용비용 $$$원을 잘못 감면하였고,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률 위반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구급차량 후송료 등 $$$원을 부적정하게 감면한 사실이 있다.

[표] 진료비 등 제요금 감면 부적정 내역 - 생략

그 결과,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과의 형평성을 저해하였고, 병원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였다.

4. 관계부서 의견

경기도의료원 ◎◎병원 ⊙⊙과에서는 개정된 감면 지침을 숙지하지 못하여 잘못 감면한 점을 인정하면서, 법률 위반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감면은 환자의 안정과 빠른 회복을 책임져야 할 병원의 도의적 책임으로 결정하였으나,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 ◎◎병원은

○ 앞으로, 경기도의료원 의료수가관리규정과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감면 지침에 따라 감면 사유와 대상, 감면율을 철저히 확인하여 진료비 등 제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하는 일이 없도록 진료비 등 제요금 감면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경기도의료원 의료수가관리규정 등에 따른 진료비 등 제요금 감면 업무를 부적절하게 한 아래 관련자를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62조의2(훈계 등 처분)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일련번호	73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과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훈계 요구

제 목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의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 병원 (△△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 병원 (△△과)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 병원 △△과에서는 「지방세법」 등에 따라 병원과 관련한 지방세 신고납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세법」제74조(정의) 제2호 및 제75조(납세의무자) 제2항에 따르면,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로 하고, 같은 법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에 따르면,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며,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무신고가산세) 및 제55조(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51조(기한 후 신고)에 따르면,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부기한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제53조 무신고가산세를 감면(1개월 이내 100분의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20)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2014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하다가, 2015년부터 주민세는 주민부담 원칙에 따라 감면 세목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2015년부터 경기도의료원 ○○○ · ●● · ◎◎ 병원은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로서 매년 7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① 경기도의료원 ○○○병원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16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주민세 재산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납세고지서를 2019년 10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결정통지 받아 감사기간 중인 같은 달 25일에서야 가산세 $$$원을 포함한 총 $$$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표] 주민세 재산분 신고의무 미이행 내역 - 생략

또한, ② 경기도의료원 ●●병원에서는 2016년 주민세 재산분을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8월 26일에서야 가산세 $$$원을 포함한 총 $$$원을 신고하고 8월 31일 납부하였고, 경기도의료원 ◎◎병원에서는 2016년 주민세 재산분을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8월 23일에서야 가산세 $$$원을 포함한 총 $$$원을 신고납부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주민세 재산분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납부함으로써 병원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였다.

4. 관계부서 의견

경기도의료원 ○○○ · ●● · ◎◎ 병원 △△과에서는 통상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안내고지를 받아 납부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으며,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 ○○○ · ●● · ◎◎ 병원은

○ 앞으로, 지방세법 등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지연함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지방세법 등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62조의2(훈계 등 처분)에 따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일련번호	74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요구

제 목 구급차 운영 및 관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ÅÅ · ￥￥병원 (☆☆☆ · ○○○)

조치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ÅÅ · ￥￥병원 (☆☆☆ · ○○○)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ÅÅ · ￥￥병원에서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제1항 따라 응급환자의 이송, 응급의료 종사자의 운송 등을 목적으로 [표 1]와 같이 일반구급차 각 △대를 운용하고 있다.

[표 1] 경기도의료원 ÅÅ · ￥￥병원 일반구급차 현황 **"생략"**

2. 이송처치료 청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4조(이송처치료)에 따르면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요금미터장치[41]를 사용해서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42]에 따라 이송처치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이송처치료를 받을 시 반드시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43]하고 구급차의 운행기록에

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제5항 [별표 17]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관리기준 9.에 따르면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요금미터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이송처치료의 기준) 제1항 [별표 3]에 따르면 의료기관 등의 일반구급차 경우 기본요금(이송거리 10㎞ 이내) 30,000원 추가요금 1,000원/1㎞로 부과한다라고 규정("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임)

4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이송처치료의 기준) 제2항에 따르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운행거리, 운행요금, 부가요금 등)의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대하여는 운행기록대장[44]에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의료법」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에 따라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료원 ÅÅ · ￥￥병원에서는 환자를 이송할 경우 요금미터장치를 사용하여 환자가 실제로 탑승한 거리에 따라 이송처치료를 받았어야 했으며 이송처치료를 받을 때는 운행거리, 운영요금, 부가요금 등이 명시된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하고 운행기록대장에 기록하였어야 했다. 또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본인부담금인 이송처치료를 면제하여서는 안되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① ÅÅ 병원에서는 [표 2,3]와 같이 '16. 4. 13. ~ 19. 10. 17.까지 일반구급차를 운행하면서 환자이송 △건 중 △건에 대하여 요금미터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환자퇴원 시 기본요금으로 일괄청구하였고 이송처치료를 받으면서 운행거리, 운영요금, 부가요금 등이 명시된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건(추정금액 $$$원)에 대하여는 이송처치료를 면제하고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② ￥￥병원에서는 [표 2,3]와 같이 '16. 4. 13. ~ 19. 10. 17.까지 일반구급차를 운행하면서 환자이송 △건 중 △건(추정금액 $$$원)에 대하여는 이송처치료를 면제하고 부과하지 않았으며 △건에 대하여는 운행기록대장에 기록하지 않았다.

[표 2] 경기도의료원 ÅÅ · ￥￥병원 일반구급차 운행 현황 "생략"

[표 3] 경기도의료원 ÅÅ · ￥￥병원 환자 이송 현황 "생략"

그 결과 운행거리로 부과하지 않고 기본요금으로 일괄청구되어 약 $$$원이 누락

4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제5항 [별표17] 10.에 따르면 구급차등 운행기록을 기재하는 구급차등 운행기록 대장을 비치·작성하고 구급차등 운용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되었으며 미청구 △건으로 약 $$$원을 부과하지 못한 결과로 병원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였다.

3. 위탁구급차 지도점검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경기도의료원 ÅÅ병원에서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제2항 따라 응급환자의 이송, 응급의료 종사자의 운송 등을 목적으로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특수구급차 △대를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구급차등의 운용위탁)에 따르면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은 그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구급차의 시설기준,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이수 등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및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료원 ÅÅ병원에서는 위탁 구급차에 대해 구급차의 시설기준,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이수 등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및 점검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경기도의료원 ÅÅ병원에서는 특수구급차를 위탁운용하면서 구급차에 구비된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등의 점검을 감사일 현재까지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4. 관계부서 의견

경기도의료원 ÅÅ·￥￥병원에서는 미청구의 경우 대부분 노숙인 등 지불능력이 없는 환자로 치료를 우선으로 이송처치료를 감면하였다고 주장하나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보건기관이 수취하여야 할 이송처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위급한 상태의 응급환자가 아니면 사전승인 등 필요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기에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 ÅÅ · ￥￥병원장은

① 앞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준수하시어 이송처치료가 미청구 및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업무연찬을 통해 위탁구급차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첨] 경기도의료원 ÅÅ병원 일반구급차 환자이송 내역 "생략"

[별첨] 경기도의료원 ￥￥병원 일반구급차 환자이송 내역 "생략"

일련번호	75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 · 훈계요구

제 목 수술실 영상처리기기(CCTV) 운영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ÅÅ · ◎◎ · ￥￥병원 (☆☆☆)

조치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ÅÅ · ◎◎ · ￥￥병원 (☆☆☆)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ÅÅ · ◎◎ · ￥￥병원에서는 불법의료행위 예방 및 환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제1항에 따라 수술실 정보주체[45]의 동의를 받아 수술실 영상처리기기(CCTV)를 설치 · 운영하고 있다.

2. 수술실 영상처리기기(CCTV) 동의서 대리 작성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개인정보 보호법」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46]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개인정보 보호법」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6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45)「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정의) 3.“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46)「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정의) 5.“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료원 ÅÅ · ◎◎ · ￥￥병원에서는 정보주체자에게 수술실 영상처리기기(CCTV) 촬영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본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정보주체자가 만 14세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경기도의료원 ÅÅ · ◎◎ · ￥￥병원에서는 [표 1]와 같이 촬영동의서 받은 총 △건 중 &건은 정보주체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에게 동의서를 받고 수술실 영상처리기기(CCTV) 촬영을 한 사실이 있다.

[표 1] 경기도의료원 ÅÅ · ◎◎ · ￥￥병원 수술실 CCTV 촬영 동의 현황 "생략"

3. 수술실 영상처리기기(CCTV) 운영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경기도의료원 ÅÅ병원에서는 [경기도의료원 ÅÅ병원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 관리 방침]에 따라 불법의료행위 예방 및 환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환자에게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운영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경기도의료원 ÅÅ병원에서는 수술을 진행하는 환자에게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고 환자가 촬영여부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경기도의료원 ÅÅ병원 ∞∞의 경우 [표 2]와 2019.05.01.부터 2019.10.17. 현재까지 수술 총 △건 중 &건(부동의)에 대해서만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해 설명하고 나머지 △건은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 경우 운영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수술실 CCTV 촬영 및 운영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 한 사실이 있다.

또한 [표 3]과 같이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중 ∞∞병원 운영 중인 ##병원을 비교하여도 촬영 동의율이 ##병원 ■%, ÅÅ병원 ■%로 ÅÅ병원에서는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2] 경기도의료원 ÅÅ병원 수술실 CCTV 촬영 동의 현황 "생략"

[표 3]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 CCTV 촬영 동의 현황 "생략"

그 결과 ① 정보주체인 본인이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촬영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② ÅÅ병원 ∞∞의 경우 환자가 불법의료행위 예방 및 환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촬영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4. 관계부서 의견

경기도의료원 ÅÅ · ◎◎ · ￥￥병원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경기도 의료원 ÅÅ병원에서는 ∞∞진료는 수술이 아니라 외래에서도 가능한 진료이나 진료협조가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신마취 후 진행하는 것으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운영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운영 목적은 환자가 의식이 없는 수술 시 불법의료행위 예방과 환자 권리 보호가 목적으로 ∞∞의 경우에도 환자가 전신마취 후 의식이 없이 진행되는 사항은 타과와 동일하므로 위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 ÅÅ · ◎◎ · ￥￥병원장은

○ 앞으로, ①「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또한, ② 임의적인 판단으로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62조의2 (훈계 등 처분)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별첨] 수술실 CCTV 촬영 동의서 대리인 작성 내역 "생략"

일련번호	76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 · 훈계 요구

제 목 **취약계층의료비지원 지급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ÅÅ · ◎◎병원 (???)

조치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ÅÅ · ◎◎병원 (???)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ÅÅ병원 및 ◎◎병원 ???에서는「경기도의료원 취약계층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경기도내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경기도의료원 취약계층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 제14조(지원내용 및 제외항목) 제1항(지원내용)에 따르면 2016.12.30. 지침개정이후[1] 의료비 지원금액은 1인당 $$$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9.02.22. 지침개정[2] 이후에는 입원은 1회당 최대 △일 이내 지원가능하며 △일 이상 입원 지원 시 병원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료원 ◎◎병원 ???에서는 지침개정이후인 2016.12.30.부터는 취약계층의료비 지원 시 1인당 연간지원액을 확인 후 $$$만원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였어야 했으며 경기도의료원 ÅÅ 및 ◎◎병원 ???에서는 입원 1회당 △일 이상 지원 시 병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의료비를 지원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① 경기도의료원 ◎◎병원 ???에서는 취약계층의료비를 지원하면서 [표 1]와 같이 1인당 연간 지원금액을 초과(△건, $$$원)하여 지급하였으며 ② 경기도의료원 ÅÅ · ◎◎병원에서는 [별첨]와 같이 △일 이상 입원환자 에 대하여 병원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의료비를 지원하였다.

[표 1] 취약계층의료비 1인당 연간 한도초과 내역 "생략"

그 결과 1인당 연간 최대지원금액 한도를 초과 된 △건($$$원)이 지원되었고 병원장의 입원연장지원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총 △건에 대하여 입원연장의료비가 지원되었다.

4. 관계부서 의견

경기도의료원 ÅÅ · ◎◎병원에서는 사업전담인력 충원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 ÅÅ · ◎◎병원장은

○ 앞으로, ①「경기도의료원 취약계층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등 관련 지침을 숙지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또한, ② 1인 연간 한도금액을 초과지급 등 취약계층의료비 지원사업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제62조의2 (훈계 등 처분)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별첨] 입원 △일 이상 병원장 미승인 내역"생략"

일련번호	77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과 등 (○○과 등)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권 고

제 목 감정평가업자 임의선정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기도의료원 ◈◈병원(○○과), ▣▣병원(○○과), ⊙⊙병원(○○과)

조 치 기 관 경기도의료원 ◇◇(○○과)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의료원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의료원 「회계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르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계산할 때에는 토지, 주택 외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의료원 「회계규정」제115조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민간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6. 11. 21.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방안' 을 의결(제2016-828호)하여 지방자치단체(산하 공기업 등 포함) 등에서 기관별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선정 기준 마련하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권고하였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경기도의료원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병원에서는 2016년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업무 민간개방 이 후 공유재

산(매점, 커피판매점) 임대료 및 불용품 매각대금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표1】과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자가 객관적인 자료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임의선정함으로써 공정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병원별 감정평가업자 임의 선정내역 "생략"

그 결과 경기도의료원 □□□병원에서는 매년 동일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저렴한 기관을 선정하는 등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경기의료원□□□병원에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본원에 관련 규정 마련을 요청하여 공정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의료원장은

○ 앞으로 감정평가업자 의뢰 시 공정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또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시 바랍니다. **(권고)**

일련번호	78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추징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과 등 (○○과 등)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훈계 요구

제 목	**공유재산(매점) 임대계약 및 수입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기의료원 ▣▣병원(○○과, △△과)
조 치 기 관	경기의료원 ▣▣병원(○○과, △△과)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의료원 ▣▣병원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및 의료원 「재산관리규정」, 「회계규정」에 따라 '경기도 ▣▣병원 본관동 지하1층 구내매점'에 대하여 2018. ◓. ◓. (주)▥▥▥와 계약기간 3년에 임대보증금 $$$,$$$천원 및 월 임대료 $$,$$$천원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의료원「재산관리규정」 제19조(임대·무상대여)에 따라 재산관리자는 병원에 속하는 재산 중 그 본래의 용도, 재산가치 및 유지관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공유재산법 제22조(사용료)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이를 연체한 경우 미납기간에 따라 연12% ~ 연15%의 연체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원「회계규정」 제53조(납입의 독촉) 규정에 따라 수납담당자는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는 납입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55조(불납한 경우의 처리) 규정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수입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료원 ▣▣병원에서는 임대계약에 따른 임대료 수납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입의무자에게 연체료를 부과, 납부독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경기도의료원 ▣▣병원에서는 매월 임대료, 관리비의 수납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 납입이 되지 않은 경우 납입의 독촉 및 연체료를 부과하여야 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표1】과 같이 ´18년 12월분 임대료, 관리비 및 연체료를 감사일 현재까지 징수하지 아니하는 등 수입관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1】 미납 임대료, 관리비 및 연체료 현황 "생략"

또한, 임대 계약 시 공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연체료율[47]을 계약서에 모두 기재하여야 했으나 미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하는 연12%의 연체료율만 기재하였다.

그 결과 임대료 및 관리비를 6개월 이상 미납 중인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정당한 연체료율(15%)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여 【표2】와 같이 연체료 $$$,$$$원을 징수할 수 없게 하는 등 재산관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2】 연체료 비교 현황 "생략"

관계기관 의견 경기의료원 ▣▣병원 △△과에서는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임대계약 시 지면 상의 이유로 연체료율을 가장 낮은 부분만 명시하였으며 향후에는 정확한 계약문구 명시와 법령 해석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의료원 ▣▣병원장은

① 경기도의료원 「회계규정」 제53조(납입의독촉) 및 제55조(불납한경우의처리) 규정에 따라 미납된 임대료 $$,$$$,$$$원, 관리비 $$$,$$$원 및 연체료 $,$$$,$$$원 등 총 $$,$$$,$$$원을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② 관련자에게는 「경기도의료원 복무규정」제6조 규정 위반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47) 미납기간별 연체료율 : 1개월 미만(연12%), 1개월이상 3개월 미만(연1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연14%), 6개월 이상(연15%)

일련번호	79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과 등 (○○과 등)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훈계 요구

제　　목　　**치과 의료기기 수의계약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기도의료원 ▣▣병원(○○과), ■■병원(○○과)

조 치 기 관　　경기도의료원 ▣▣병원(○○과), ■■병원(○○과)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병원, ■■병원 ○○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의료원 「회계규정」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함) 제9조(계약의방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아목에 따라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4조(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시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 이라함)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2천만원 이상의 물품 계약에 대하여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료원 ▣▣병원 및 ■■병원에서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치과 유니트체어에 대하여 2천만원 이상의 물품에 해당하므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경기도의료원 ▣▣병원과 ■■병원에서는 치과 유니트체어[48]를 구입하면서 사업부서로부터 장애인용 유니트체어는 ㈜◐◐◐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수지정사유서를 제출받아 타 기관 입찰사례 확인 등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표1】과 같이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1】 치과 유니트체어 수의계약 현황 “생략”

또한, ■■병원에서는 그 과정에서 장애인용과 일반용을 각각 2천만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동종 장비에 대한 타 기관의 입찰결과 등 사례를 확인하여 본 바 ㈜⊙⊙⊙⊙이라는 업체가 동종 장비를 납품하고 있었고 해당업체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병원이 구입한 장애인용 유니트체어와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기타 업체(◇◇, ◎◎◎◎◎ 등)의 입찰참여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경기도의료원 ▣▣병원 및 ■■병원에서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인 G2B를 이용한 일반입찰을 통해 다수 업체의 공정한 참여 경쟁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낙찰하한율 적용에 따른 예산절감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의료원 ▣▣병원과 ■■병원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당시 장애인치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장애인용 유니트체어는 ㈜◐◐◐에서만 생산한다는 사업부서장의 의견을 받아 수의계약 한 것으로 향후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계약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의료원 ▣▣병원장, ■■병원장은

① 앞으로 각종 의료기기 구입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지방지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48) 치과 유니트체어 : 치과 진료용 의자로 진료장비와 의자가 결합된 형태의 의료기기.

②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경기도의료원 복무규정」제6조 규정 위반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일련번호	80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병원 ○○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통 보

제　　목　　**임직원 관사 유지·관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ÅÅ병원(¢¢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ÅÅ병원(¢¢과)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병원은 아래 [표 1]과 같이 관사 또는 임대주택을 대여하여 병원 직원의 주거 안정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있다.

[표 1] 관사 현황 “생략”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경기도의료원「재산관리규정」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르면 재산관리를 위한 병원의 부문재산관리자는 병원장이며, 부문재산관리자는 재산관리담당과 재산운용담당을 둘 수 있으며, 재산관리담당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병원장의 결재를 얻어 관리자 및 분임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8조 규정에 따르면 분임재산관리담당은 의료원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의료원 재산인 관사에 대하여 훼손이 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종합감사 기간 ÅÅ병원 소유의 관사 2동에 대한 현장 점검(2019. 11. 1.)시 1989. 7. 10. 매입 후 약 30년이 지나 시설이 전체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아래 [표 2] 와 같이 방 천장 누수 및 화장실 벽채가 파손되어 있는 등 관사 유지・관리에 소홀히 하였다.

[표 2] ÅÅ병원 소유 관사 관리 부적정 현황 "생략"

그 결과 ÅÅ병원 소유의 관사인 □□빌라 □동 □호는 2012. 6. 30.일 이후부터, □□빌라 □동 ○호는 2016. 4. 14.일 이후부터 약 7년 또는 3년간 입주자가 없이 관리비(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관리비) 및 재산세 등으로 매년 약 $$$,$$$원을(2018년 기준) 지출하고 있으며, ÅÅ병원 소유의 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인근에 3동을 임차하여 관사로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계부서 의견

경기도의료원 ÅÅ병원에서는 ÅÅ병원 소유의 관사는 1989년 매입하여 약 30년 이상이 지난 노후 건물로 2동 리모델링시 약 32백만원 비용이 예상되어, 매각하는 것이 병원 경영에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 ÅÅ병원장은

○ ÅÅ병원 소유의 노후되어 사용하지 않는 관사 2동에 대하여 리모델링 및 매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81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병원 ●●과 등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훈계 요구

제 목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과), ◇◇병원(◎◎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과), ◇◇병원(◎◎과)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병원, ◇◇병원에서는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자산의 취득, 운영, 처분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물품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경기도의료원「물품관리규정」제4조(물품관리체계) 규정에 따르면 물품의 취득, 보관, 처분 및 관리를 위하여 각 병원에 물품관리자를 두고, 물품관리자는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담당, 물품출납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물품관리자는 물품관리 업무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및 통제,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물품관리담당은 물품의 보관, 출납유지 및 기록에 관한 업무를 하며,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사용, 취급, 보관 유지 및 기록 등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물품관리규정」제8조(장부비치) 규정에 따르면 물품관리자는 소정서식의 물품관리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여 물품별 취득, 처분,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16년도 경기도의료원 컨설팅 종합감사(2016. 4. 4. ~ 4. 12.) 결과 '자산관리 시스템 운영 및 재물조사 업무처리 소홀'로 지적받아 통보[49]된바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물품관리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여 물품별 취득, 처분,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 정리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경기도의료원 ☆☆☆병원, ◇◇병원의 자체 엑셀파일로 관리하고 있는 물품 대장 목록 중 ◇◇과와 □□□□ 물품을 표본 확인한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물품 대장 목록에 누락되어 있는 물품이 있는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물품 대장 누락물품 "생략"

3. 재물조사 미실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경기도의료원「물품관리규정」제24조(정기재물조사) 및 동 규정 제27조(재물조사의 결과분석) 규정에 따르면 병원의 모든 물품을 실제의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을 대조 확인하는 정기 재물조사는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재물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물품 과부족 원인, 물품의 상태 등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년도 경기도의료원 컨설팅 종합감사(20@@. #. #. ~ #. ##.) 결과 '자산관리 시스템 운영 및 재물조사 업무처리 소홀'로 지적받아 통보된바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병원의 모든 물품을 실제의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을 대조 확인하는 정기 재물조사를 2년에 한 번씩 실시하여야 했다.

---

49) 20**년도 경기도의료원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통보[경도의 행정-○○○○, 20**.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경기도의료원 ☆☆☆병원에서는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병원에서는 20##년, 20##년 병원 재물조사 계획 수립만 하고 재물 조사를 완료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관계부서 의견

물품대장을 정비하고 2년마다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 ☆☆☆병원장, ◎◎병원장은

○ 물품관리 장부 및 대장 정비를 실시하시기 바라며, **(시정)** 앞으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년마다 정기 재물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62조의2(훈계 등 처분)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일련번호	82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병원 ●●과 등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 요구

제　　목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관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과), ◇◇병원(◎◎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의료원 ☆☆☆병원(◎◎과), ◇◇병원(◎◎과)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의료원 ☆☆☆병원, ◇◇병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시설 현황　"생략"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르면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하며,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규정에 따르면 종합병원 및 장례식장(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 대상이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르면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와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규정에 따르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종합감사 기간에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 병원(장례식장 포함) 9건, ◇◇병원 5건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미준수 하였다.

[표 2] 편의시설 설치기준 미준수 내역 "생략"

4. 관계부서 의견

경기도의료원 ☆☆☆병원, ◇◇병원에서는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협조를 요청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의료원 ☆☆☆병원장, ◇◇병원장은

○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유지・관리할수 있게 금회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등(필요시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협조 요청 등)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개선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 첨] 병원별 점검시설 설치기준 및 점검결과 "생략"

일련번호	83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청구 반납	재정상 조치금액	$$$원 $$$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 의료원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훈계 요구

제 목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경기도 의료원 (○○병원, △△병원, ◎◎병원, ▲▲병원)

조치기관(부서) 경기도 의료원 (▽▽▽)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 의료원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및「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진료병원(또는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어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국가보훈처는 보훈 대상자 진료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독립유공자 본인의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75세 이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진료비는 60%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지정병원을 지정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유족 및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의료원은 독립유공자 유족 및 그 배우자(이하 “독립유공자 유족 등”이라 함)로부터 진료 신청을 받은 경우, 우선 신분증과 진료증 등을 통해 보훈 자격을 확인하고, 진료비 산정·청구에 대해서는「경기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지침」에 따라 국가보훈처 위탁병원은 [표1]와 같이 대상자별 지원 비율에 따른 진료비를 국가보훈처로 신청하고 그 잔액을 경기도(시군)로 매월 1회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독립유공자 등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국가보훈처 지원 비율을 확인하여 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와 경기도(시군)로 나눠서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표1] 국가보훈처의 대상자별 외래 진료비 지원 비율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국가보훈처 부담 외래 진료비를 시청으로 청구

그런데도 경기도 의료원 ○○병원은 [별표1]과 같이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보훈처 의료비 지원비율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국가보훈처로 진료비 60~90%를 청구할 수 있는 환자 $$명의 진료비 $,$$$천원을 ◇◇시청 등 $개 시청으로 청구하였으며, △△병원도 환자 $$명의 진료비 $,$$$천원을 국가보훈처가 아닌 □□시청으로 청구하였다.([별표2])

그 결과 ◇◇시청, □□시청 등 $개 시청은 국가보훈처가 지원하여야 하는 진료비 $,$$$천원까지 시청 예산으로 부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외래 진료비 미지원

경기도 의료원은 [별표3]과 같이 경기도와 국가보훈처로부터 외래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환자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환자 $명에게 진료비 $,$$$천원을 청구 · 수납하였다.

세부적으로 △△병원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 등 환자 $명에게 진료비 $$$천원을 청구하였고, ◎◎병원은 $,$$$천원($명), ○○병원은 $$$천원($명)을 각각 청구 · 수납하였다.

다만, 환자가 진료비 납부 시 독립유공자 진료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병원으로 요청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이다.

다. 외래 진료비 지연 및 미청구

○○병원은 [별표4]와 같이 2016. 1. 1.부터 2019. 6. 30.까지 독립유공자 등 $$명에

대해 $,$$$건을 진료하고 그 진료비를 □□시청 등 $개 시청에 정상적으로 청구하였으나 국가보훈처가 부담하는 진료비 $$,$$$천원을 최대 $$개월 지연 청구하였다.

△△병원은 2018. 1. 1.부터 2019. 8. 31.까지 독립유공자 등 $$명의 $$$건에 대한 진료비 $,$$$천원을 국가보훈처와 ◎◎시청으로 감사일 현재까지 $$개월동안 청구를 하지 않았고, ◎◎병원도 같은 기간 $$명의 $$$건 진료비 $,$$$천원을 국가보훈처와 □□시청으로 청구하지 않았다.

라. 외래 진료비 청구 중복·누락 등

○○병원은 [별표5]와 같이 $건의 독립유공자 유족 등에 대한 진료비 청구 시 국가보훈처와 시청으로 $$천원을 중복 또는 과다 청구하였으며, [별표6]와 같이 $$건에 대해서는 청구를 누락하거나 계산 착오로 $$$천원을 과소 청구하였다.

◎◎병원은 [별표7]과 같이 국가보훈처의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닌 환자 $명에 대해 지원 대상으로 잘못 분류하여 $$건에 대한 진료비 $,$$$천원을 △△시청으로 전액 청구하여야 했으나 $$$천원(40%)만 청구하였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60%에 해당하는 진료비 $$$천원에 대한 청구를 누락하였다.

"다·라" 항과 같이 경기도 의료원은 독립유공자 유족 등 진료 후 그에 대한 진료수입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진료 수익이 병원 수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병원 재정 운용에 영향을 주었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 의료원장은

○ **"가·나·다항"** 관련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진료비 청구 업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라항"** 관련 중복 청구하여 반납해야 하는 진료비와 과소·누락 청구한 외래 진료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 후 청구 또는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국가보훈처로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위탁 진료비 청구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경기도 의료원 「인사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별표1]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의료비 부담비율 착오 현황

[별표2]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의료비 착오 청구 현황

[별표3] 독립유공자 유족 등에 대한 진료비 미지원 내역

[별표4] 국가보훈처와 지자체로 진료비 지연청구 내역

[별표5] 국가보훈처와 지자체로 진료비 중복 청구 현황(○○병원)

[별표6] 진료비 청구 누락 및 착오 산정(○○병원)

[별표7]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진료비 청구 누락 내역

일련번호	84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 의료원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훈계 요구

제 목 **국가보훈처 위탁진료비 청구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 의료원 (◎◎병원, △△병원, ◎◎병원)

조치기관(부서) 경기도 의료원 (▽▽▽)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 의료원은 중앙보훈병원과 2년마다 ‘위탁진료 표준계약’을 체결하고「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보훈 의료지원 규칙”이라 함)에 따른 “전상군경 등”(별표2)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등”(별표3)을 대상으로 보훈병원의 위탁진료를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경기도 의료원은 보훈 환자로부터 진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 신분증, 진료증 등을 통해 보훈 자격을 확인한 후 진료를 하여야 하며, 진료비 산정 및 청구에 대해서는「위탁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중앙보훈병원-경기도의료원 간 위탁진료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함) 등을 준수하여 국가보훈처로 그 의료비(위탁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보훈 의료지원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부담하는 보훈 환자의 진료비, 즉 경기도 의료원이 국가보훈처로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의 비율은 “전상군경 등”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전액,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등”은 100분의 60,「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분의 90으로 규정되어 있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경기도 의료원은 위탁 진료비를 청구할 때 진료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정서 사본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1회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기도 의료원은「표준계약서」 등을 준수하여 국가보훈처가 부담하는 보훈환자별 진료비를 적정하게 산정하고 매월 1회 단위로 서면 청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경기도 의료원 ○○ · △△ · ◎◎병원은 [별표1]와 같이 외래 · 입원 진료비를 국가보훈처로 최대 33개월 지연 청구하는 등 위탁진료비 청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병원은 2017년 10월 이후 국가보훈처로 진료비를 청구할 시 9~22개월 지연 청구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이 건이 지적되자 2017. 12. 1.부터 2019. 6. 30.까지(19개월) 진료비 $$$,$$$천원을 최대 22개월 지연 청구하였다.

△△병원은 2015년 3월 이후 감사기간까지 국가보훈처로 진료비를 8~33개월 지연하여 청구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외래 진료비 $$$,$$$천원(2016. 11. 1. ~ 2019. 8. 31., 34개월), 입원 진료비 $$,$$$천원(2018. 9. 1. ~ 2019. 8. 31., 12개월)을 최대 33개월 지연 청구하였다.

◎◎병원은 2016년 4월 이후 감사기간까지 국가보훈처로 진료비를 최대한 8~21개월 지연하여 청구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외래 진료비 $$,$$$천원(2018. 1. 1. ~ 2019. 8. 31., 20개월), 입원 진료비 $$,$$$천원(2018. 1. 1. ~ 2019. 8. 31., 20개월)을 최대 20개월 지연 청구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 의료원장은

○ 앞으로 국가보훈처 위탁병원 진료비 청구가 지연되지 않도록 국가보훈 관련 규정에 따라 진료비 산정・청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국가보훈처로 위탁 진료비 청구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경기도 의료원「인사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별표1] 병원별 외래・입원 진료비 청구
[별표2] 전상군경 등
[별표3]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등

일련번호	85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지급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 의료원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 요구

제 목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경기도 의료원 (○○병원)

조치기관(부서) 경기도 의료원 (▽▽▽)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 의료원은「경기도 의료원 보수규정」제28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보수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경기도 의료원「보수규정」“별표 6”에 따르면 가족수당은 배우자 월4만원, 첫째 자녀 월2만원, 둘째 월6만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0만원, 직계가족 등 부양가족 월2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으며, 수당 지급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 포함)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 포함)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하여는 부양가족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소속 직원의 부양가족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별표]와 같이 소속 직원의 자녀 가족수당 지급 시 지급연령 기준(만19세) 도달로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했으나, 급여 지급 담당자가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을 기준으로 가족수당의 지급을 중단하여 1개월의 가족 수당을 미지급하여 총 $$명에게 가족수당 $$$천원을 미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 의료원장은** 미지급한 가족수당을 지급하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표] 자녀 가족수당 미지급 내역

일련번호	86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경기도 의료원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 요구

제 목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경기도 의료원 (○○병원)

조치기관(부서) 경기도 의료원 (▽▽▽)

내 용

1. 업무 개요

경기도 의료원은 「경기도 의료원 여비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의료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로 출장한 경우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경기도 의료원 「여비규정」 제9조에 따르면 국내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 여비규정」 제7조에 따르면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같은 규정 제16조에 따라 국내 여행자의 일비·숙박비·식비는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경기도 의료원 ○○병원은 [별표]와 같이 $$명에 대해 동일한 출장 건의 출장여비 $$$천원을 중복 지급하였고, $명에 대해서는 같은 날 다른 목적으로 출장을 두 번 다녀온 경우에 일비를 1회로 산정하여야 하나 2회로 산정하여 $$천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그 결과 $$명 직원에게 2017년부터 현재까지 출장여비 $$$천원을 중복・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 의료원장은** 중복・과다 지급한 출장 여비를 환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표] 출장 여비 중복 지급 내역